

KIN일본위원회, 2002년 정기세미나 정리자료집

재일조선인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은 각 국 지구촌 동포청년들이 참여하는 진보적
네트워크로 동포사회 및 지구촌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KIN - Progressive network of Korean youths world wide and of Korean
ethnicity for mutual exchange, cooperation, & solidarity

(110-071)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71번지 삼록빌딩 503호 Tel. (02)735-4327 Fax. (02)735-4328
e-mail kin@kin.or.kr 인터넷 <http://www.kin.or.kr>

KIN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110-071)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71 삼록빌딩 503호 Tel. (02)735-4327, Fax. (02)735-4328,
E-mail. kin@kin.or.kr, Web-site. www.kin.or.kr

KIN일본위원회, 2002년 정기세미나 정리자료집

재일조선인



KIN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110-071)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71 삼록빌딩 503호 Tel. (02)735-4327, Fax. (02)735-4328,
E-mail. kin@kin.or.kr, Web-site. www.kin.or.kr

글 싣는 순서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에 관하여 p02	손동주 (KIN일본위 실행위원)
재일조선인 역사, 조직형성, 발전과정 p09	송재근 (KIN일본위 실행위원)
일본국 거주 시민으로서의 재일조선인 문제 p22	배지원 (KIN일본위 실행위원)
남·북한 및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p39	배덕호 (KIN 집행위원)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에 관하여

손동주

KIN일본위원회 실행위원
wkfkd-han@hanmail.net

1. 들어가며

굳이 자의와 타의의 구분을 둘 필요 없이, 한반도로부터 바다를 건너 일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재일교포, 재일동포,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在日), 재일조선인..... 하물며 조센징까지...그들을 어떻게 부르는가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데에 일면 하등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작일 수도 있다.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 속에서 이민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호칭은 각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혹은 어떤 집단에 대한 호칭은 부르는 사람에게는 편의일 수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자기정체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의 존재의 확인이 호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이다.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이름이 아닌 부르는 자의 편의(그것이 학문적 고찰에서든, 정치 사회적 유의성에서든)에 의해 달라지는 호칭은 때로는 자기정체성의 혼란을, 또 때로는 자기정체성의 포기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로 서기 위한 노력을 애초부터 흔들어 놓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글을 써 내려가면서 일관성을 두어야 할 호칭에 고민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애석하게도 필자는 그들 속에 있지 못하다. 그들의 삶에서 아마도 한 발짝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글 중에 불려질 호칭이 그들의 삶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줄곧 필자를 괴롭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들의 호칭을 ‘재일조선인’으로 하고 글을 써내려 가고자 한다.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반도와 일본이라는 섬 사이에는 종전(終戰) 60여 년이 되도록 아직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반도와 그들을 잇는 끈은 갈래로 나뉘어 그들이 원하지 않는 힘겨루기에 의해 위태롭게 흔들거리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에 그들의 호칭을 ‘재일조선인’이라 하기로 한다. 이제 식민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조선반도로부터의 이주민과 그 자손들의 이름으로서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에 관해 생각해보자 한다.

2. 정체성 형성의 전제조건

한 인간의 정체성 확보와 형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의식의 확보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한 길에서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의 맥으로 이을 수 있는 자기 근본에 대한 의식을 가지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인간이 아닌 다수가 이루어내는 집단의 정체성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집단의 형성 과정에 대한 파악이 선행된다는 점 말고 집단이 겪었던 과거와, 처해있는 현재와 미래를 일관된 선상에서 바라보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재일조선인’에게 있어서 정체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형성하게 한 역사가 알고 있는 ‘민족 의식’일 수 있다. 이 ‘민족의식’은 현재까지도 그들을 ‘재일조선인’으로 있게 하는데 가장 큰 매개였으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것에 더한다면 현재 ‘재일조선인’이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은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생활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인정이며 삶의 바탕이 된다. 이 두 가지의 의식에 경중(輕重)을 두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며 ‘재일조선인’의 입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한 사고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한일 역사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면서 ‘애국심’과 ‘민족성’에 매몰되어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은 ‘재일조선인’의 현실적 삶의 터전을 부정하는 오류를 가지게 된다. 또 일본 사회에서의 생존을 이야기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치우치는 정체성 논리 역시,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폐쇄적인 민족의식을 간과한 채 오로지 현실에의 굴종을 요구하는 패배적 논리인 동시에 ‘일본’이라는 좁은 틀에 ‘재일조선인’을 묶는 자기 구속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람직하고도 분명한 모습으로의 한일 역사 청산과, 분단 상태의 조국에서의 민주화와 자주 통일의 실현, 나아가 기민(棄民)정책이 아닌 모든 동포들을 안고 가는 전민족화합(全民族和合)의 정책 실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위에서 단순히 일본 사회내의 ‘민족적 소수’가 아닌 일본 사회의 당당한 구성체로서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민족’과 ‘사회’를 아우르는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할 수 있겠다. 반도와 섬 사이, 그 차이를 훨씬 넘는 간극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입장

에서 자기정체성의 문제는 특히 민감한 것일 수밖에 없고, 선택하지 않은 여러 여건들로 인해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 낼 21세기를 관통하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문제는 '재일조선인' 자신들과, 또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우리들 모두가 함께 풀어 가야할 시대적 사명이라 하겠다.

3.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재일조선인'. 그들은 분명히 '한민족'이다. 결코 일본 민족이 될 수 없는 반도로부터의 도래인, '한민족'으로서 '재일조선인'인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국적 표시란에는 세 가지의 표기 방법이 있다. 남한 정부와 일본 정부의 국교정상화 이후 취득된 '한국적', 일본으로 귀화하며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생긴 '일본적', 그리고 종전(終戰) 처리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주어진 무국적자로서 호적 개념의 '조선적' 등이다. '한국적', '일본적', '조선적' 등 표기는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재일조선인'일 뿐이다.

'조선적'의 대부분은 반도 북쪽의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만 통일된 조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며, '한국적' 취득자의 일부는 남측 정권의 지지자라기 보다는 남한에의 입국 등, 편의에 의한 선택 경향이 있고, '일본적'으로 표기되는 귀화자 역시 사회 생활의 편의가 가장 큰 선택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적'을 취득한 귀화자들은 아무리 귀화를 했어도 결코 완전한 일본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귀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경우는 '재일조선인'에서 귀화한 일본인이라는 것을 애써 숨기려하지 않는다.¹⁾

'재일조선인'이 일본 사회 내에서 불편 없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민족적 정체성'이 오히려 민족적 차별을 불러오고, 그로 인해 사회부적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 착각은 시대와 세대의 변화를 부정하는 데에 기인한다. 아울러 자기정체성에서 뿌리에 대한 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하는 근시안적 사고에 불과하다.

바야흐로 세계는 '적대적 민족관'에서 '공생적 민족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이다. 더구나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모습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재일조선인'의 세대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3-4세에 이르러서는 최소한 교우관계에 있어서 '조센정'으로서의 차별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밖의 정치·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1) 일례로 재일조선인 가수 박영일(朴英一)(일본명 아라이에이치)씨는 귀화 후에도 스스로를 '코리안재페니즈'라 표현하면서 일본인 세션들과 음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재일조선인'임을 밝히면서도 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청하를 방문한 후, 만든 노래 '청하로 가는 길'로 일본 음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차별의 근거들도 점차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세대적 변화 속에서 더욱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 '민족적 정체성'인 것이다.

한 사회 속의 차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생기게 된다. 이 차별의 극복에는 가해자의 반성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피해자의 당당한 목소리이다. 차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을 당당한 목소리, 그 바탕에는 차별 받을 수 없는 근거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분명한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실리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의 관계가 차별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당당한 목소리로 가해자의 참회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재일조선인'으로서의 당당함, 그 시작은 당연하게도 '민족적 정체성'의 확보이다. 차별 받아도 당연한 민족이 아닌,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민족임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민족적 정체성'의 확보와 형성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역사 청산, 분단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 전민족화합 정책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는 어느 누구 하나의 몫이 아니라 재일조선인과 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 내야 할 숙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함께 풀어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것은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자각을 잊지 않는 '민족성'의 유지이다. '민족성'은 단순히 혈통에 근거하는 것 이 아니라, 혈통을 매개로 하여 공유할 수 있는 문화와 역사에의 학습을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민족성'의 형성과 유지에 가장 유력하면서도 기초가 되는 것이 모국어의 습득과 활용이다.

재외동포들에게 우리와 같은 가치관과 역사, 문화 풍습을 공유하기를 바란다면 '민족교육'의 실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민족교육의 시작이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말을 할 수 있어야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말로 이루어지는 의사 소통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의 확보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민족학교 설립을 통한 민족교육, 즉 우리말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 1985년의 조사에 따르면 '재일조선인'의 취학 상황은 민단계 학교 1%, 조총련계 학교 13%, 일본의 공사립학교 86%로 이루어져 있다.(아래 표 참조)

민족학교의 설립 현황을 보면 '재일조선인' 학생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게다가 총련계 학교가 민단계 학교의 10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단에 많은 금액의 지원을 하고 있는 남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남한 정부의 몫 말고도 민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민족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민단계와 조총련계로 나뉘어 있지만 현재 실제 취학 상황을 보면 민단계 학생들의 조총련계 학교 재학 비율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민단과 총련으로 나뉘는 이념의 갈등이 상당부분 상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념 및 생활 속에서 갈등의 완화를 통한 '재일조선인' 사회의 통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로 한층 가속화되고 있으며, 점차 남북 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이름 그대로 '재일조선인' 사회의 형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재일조선인'의 민족적 정체성 확립은 물론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보여 진다. '재일조선인' 사회의 통합과정은 한 민족으로서 공통의 말과 문화를 나누고 하나로 이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재일조선인 학생 취학상황(1985년 현재)

	학교급별	학교수	재학생수	비율
민단계 학교	소 학 교	3	577	1%
	중 학 교	4	354	
	고등학교	4	646	
	계	11	1,577	
총련학교	초급학교	85	9,809	13%
	중급학교	56	5,201	
	고급학교	11	4,552	
	계	152	19,532	
일본의 공사립 학교	소 학 교	24,777	57,269	86%
	중 학 교	10,723	38,007	
	고등학교	5,028	35,199	
	계	40,528	130,475	
합계		151,614	100%	

<재일한국·조선인 역사와 전망(강재언,김동훈/한림신서)>에서 재인용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이야기 할 때, '재일조선인' 사회의 민족의식 못지 않게 일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부분도 중요하다. 2002년 월드컵을 앞 두고 '재일조선인' 3-4세 청년들에게, 한일전이 벌어진다면 한일 양국 중 어디를 응원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상당수의 청년들이 일본, 혹은 양쪽 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 청년들이 일본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적 정체성의 붕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 터전에의 애착에서 오는 것이다. '재일조선인' 청년들에게 일본은 이미 그들의 삶의 질을 규정하고 이끄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회 공간인 것이다. 1-2세와는 달리 3-4세 '재일조선인'에게는 일본이 자신들의 고향인 셈이다. 무엇보다

도 일본에서 나고 자란 그들이 일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며 역할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재일조선인' 청년들에게는 또 하나, 현실 사회에 적응해야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들은 '민족적 정체성'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위한 곧은 사고,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민족적 정체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이질적이면서도 동질적이다.

사회적 여건의 성숙과 함께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부딪히고 문제로 발생할 일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자주 부딪히며 괴리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민족적 정체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간의 괴리는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재일조선인' 청년들은 크고 작은 괴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 괴리감에는 일본 내의 문제보다 한국 내의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인다.

우리말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재일조선인'들이나 일본 국적 취득자에 대한 냉담한 반응과 눈에 띠는 거부감의 표시는 콤플렉스에 지나지 않는다. 어째서 북미나 유럽의 동포들에게는 외국 국적 취득이나 말을 못하는 것에 관대하면서 유독 '재일조선인'에게만 그것들을 강요하는가. 북미, 유럽의 동포들과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던 '재일조선인'임에도 말이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유독 일본으로의 귀화자만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 누계에서 빠진다는 것은 분명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이 그러한데 일반인의 시각은 오죽할까. 온당치 못한 한일 역사의 청산은 우리 모두의 뜻이다. 그 책임을 가장 큰 피해자인 '재일조선인'에게만 묻는다는 것은 진정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확보와 형성은 '재일조선인' 자신들의 뜻이 가장 크다. 하지만 그들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한반도의 정권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뜻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은 결코 그들만의 뜻이거나 당면문제가 아니다.

4. 나오며

'재일조선인'의 형성은 반세기 이상이 훌렀지만 정체성의 형성은 이제 시작인 셈이다. '재

일조선인'이 가지는 정체성에는 '이것이다'라는 정답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한민족'의 정체성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들이 한민족인 동시에 이미 일본이라는 섬나라에서 생활 기반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시 그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는 강요와 억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모든 문제는 '재일조선인'의 입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요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재일조선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애정이 필요하다.

'재일조선인'은 아직까지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일반적인 재외동포들과는 분명 다른 위치에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한민족'으로서 일본 내에서 정주(定住)하는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반도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전민족화합의 길에 기여를 하게될 것이다. 혼자가 아닌 함께 내딛는 큰 걸음만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끝>

<참고 자료>

1. 논문 <21세기를 향한 '在日'의 아이덴티티 -관계성의 모습-> / 윤건차
2. 1998년 창작과비평 겨울호
 <재일조선인이 나아갈 길-'에스닉 마이너리티'인가 '네이션'인가> / 서경식
3. 논문 <재일 한국·조선인 - 형성과정과 현재 그리고 그들의 역할- / 이홍락
4. 2000년 <재일한국·조선인 역사와 전망> 강재언, 김동훈 공저. 한림신서

재일조선인 역사, 조직형성, 발전과정

송재근

KIN일본위원회 실행위원

myloko@hitel.net

1. 머리말 - 내가 말하고 싶은 재일조선인

분단의 역사, 해방 이후 한국의 잘못된 역사는 한국인과 재일조선인과의 잘못된 관계 설정을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 재일조선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관심은 식민국에 대한 예의?였으며 왜곡되기 이전에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이미 잘라진 몸뚱이의 일부였다. 또한 재일조선인은 분단을 조장하는 도구로 이용돼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면서도 이데올로기적 대립관계를 만들고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 친북적 사람들이라는 관성이 깊숙이 남아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비굴하고 막혀있던 역사는 현실에서 마저 그들과 상당한 벽을 만들어 놓아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관계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많은 재일조선인들이 한국인들에 의해 상처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재일조선인 유도선수 추성훈이 일장기를 달고 세계국제유도선수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고향에서 아버지의 못 다한 유도의 꿈을 이루고자 한국에 왔으나 보이 지 않는 덧세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갔다. 다시 한국을 찾은 그는 실력으로 태극마크를 달았으나 "조선 땅에서까지 차별 받고 싶지 않다"며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여러 대회를 휩쓸며 일본 유도 계의 간판스타로 성장하고 있는 재일조선인 추성훈을 보면서 나는 우리의 스스로에게까지 닫쳐진 민족주의와 재외동포를 보는 빠뚤어진 시각에 가슴이 저미는 아픔을 느낀다. 물론 이는 비단 추성훈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에 유학이나 여행을 온 많은 재일조선인들이 한국과 자신들과의 머나먼 관계를 확인하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던 조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국에 가졌던 기대와 사랑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혼란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젠 더 이상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쉬운 말 한마디와 행동에 의해 상처받고 등 돌리는 재일조선인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우리를 이해하는 조국",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본의 총련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재평가되고 재인식되어져야 한다. 왜곡되기 이전에 차단되어져 왔던 총련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탈냉전, 통일 시대를 맞기 위한 필수 조건

이며 우리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해외동포 단체로써 총련의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의 자산인 총련으로 인식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재일조선인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과의 모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일제와 분단의 역사를 이해하는 배경이 되며 올바른 역사관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90%이상이 남한에 고향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재일조선인이 조선적을 가지고 총련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해방 후 재일조선인에게 ‘조선인’이라는 관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의 관리를 위해 나누어준 ‘조선반도 출신자’라는 표를 유지한 것에 불구하고 하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북을 지지하고 ‘공화국 해외공민’임을 자신있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단순히 관성 따위나 일본 정부의 관리상이라 치부한다면 앞으로 총련과의 관계 설정이나 그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될 것은 북의 재일조선인 정책에 대한 역사와 올바른 이해일 것이다. 이는 총련이 11개에 불과한 민단계 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학교를 운영하고 우리말을 지키고 있는 것과도 관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물음은 우리의 과거 잘못된 시각을 반성하게 한다. 민단과의 대립관계만으로 총련을 설정하고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사회에서 함께 공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단 이데올로기의 대립 관계를 초래했던 한국정부의 역사적 과오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며 총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외교적 자원이자 통일시대를 함께 할 해외동포로써 총련의 재설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재일조선인 / 재일조선인 단체의 역사

<재일조선인의 형성 배경>

재일조선인의 존재는 과거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의 역사적 산물이며 재일조선인 사회가 분단된 원인은 한국정부가 재일한국인만을 동포로 인정하고 민단을 총련의 대립관계로 설정, 조장하여 정치적 수단으로써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해방 직전의 재일조선인의 대부분은 강제징용으로 도일한 것이며 자유의사에 의해 도일한 경우는 극소수이다. 자유의사에 의해 도일한 경우 또한 본국에서의 경제파탄이나 유학으로 도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도일한 조선인은 해방직전에 그 수가 240만 명에 달하였다. 그 당시의 인구가 2천만이라고 한다면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재일조선인인 셈이었다.

해방이 되자 귀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항구로 모여들어 혼란스러운 상태로 치달았고 미군사령부가 1946년 2월 17일 귀환 등록성명을 발표 3월 18일까지 한 달 이내에 귀환 희망자는 등록할 것과 등록을 않거나 등록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귀환을 상실한다고 했다. 등록한 조선인중 북한으로의 귀환을 희망한 자는 9.700명 1.5%에 불과했고 이것은 해방직후 재일조선인의 대부분이 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귀환 길에 올라 1949년까지 180만 명이 귀환 길에 올랐으나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귀환은 주춤하게 되었고 1950년 미군사령부의 지령으로 귀환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로써 60만 명의 재일조선인이 일본사회에 잔류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불가피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미군사령부가 귀환 당시 1천엔 이하의 통화와 250파운드 이내의 화물만을 가지고 귀환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본국에서의 생활 기반이 없는 동포들에게는 1천엔으로 본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웠으며 본국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었다.

둘째는 일본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조선인은 일본공산당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한으로 귀국이 어려웠다.

셋째 당시 남한은 경제난과 취업난이 심각했으며 이로 인해 귀국했던 자들이 다시 일본 행을 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60만 명의 재일조선인이 일본에서 잔류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일조선인의 운동이 일본공산당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왜냐면 일제시대 대다수의 재일조선인들이 일본 내 하층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일본공산당과 관련을 맺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일조선인의 95%가 고향이 남한임에도 불과하고 귀국 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그 당시 재일조선인의 운동은 조국의 해방과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위해 반일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공산주의와 연계를 하고 있는 일본공산당과 연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재일조선인 사회는 생성 초기부터 그들이 갖고 있는 객관적 조건으로 인해 좌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재일조선인의 좌익적 성향은 민족적인 성향과 강하게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재일조선인이 친북적 성향을 가지게 된 형식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북이 재일조선인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었다.

<조련과 민전>

해방 직후 일시적으로 일본내 조선인의 자치적 단체가 3백 여개에 이르기도 하였는데 이

러한 단체를 규합하여 1945년 9월 10일 [재일조선인연맹 중앙준비위원회-조련] 이 설립되었다. 이는 현재의 총련과 민단의 모태이기도 한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련은 태동부터 좌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 직후에 결성된 만큼 당시 재일조선인 사회의 최대 문제였던 본국으로의 송환 업무를 주로 다루었으며 사회 사업적인 성격이었지 정치적인 색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공산당 당원으로 17년 동안 수감되었다가 해방 이후 출감한 김천해의 지도를 받으면서 점차 정치 색을 띠게 되었다. 그는 조련 창립대회에서의 연설에서 조선의 완전독립을 주장했으며 이러한 조련의 체질변화는 대외투쟁으로 이어지는 한편 대내적으로 친일적 지도자와 노선이 다른 지도자들을 제외시키고 점차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대표적인 투쟁으로는 판신투쟁을 들 수 있으며 조련의 체질변화에 반발하여 세력의 이탈이 발생했다. 이는 민단을 결성하는 동기가 되었다. 하지만 카지무라 히데키(재일조선인 운동 1945~1965 서울, 현음사, 1994)에 의하면 이 시기의 건청, 민단은 현재의 민단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카지무라는 조련과 건청의 대립은 인정하고 있지만 건청과 초기 민단의 핵심 인물인 박열, 이강훈, 원심창 등이 48년 이승만 정부수립 이후 [재일본대 한민국거류민단]으로 조직변화하면서 이승만 정부와 대립하여 이탈하였고 오히려 조련에 다시 합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조련의 폭력적 성향은 일본당국과 마찰을 빚게 되었고 미군총사령부는 귀국업무에 조련을 배제할 것과 1949년 재일조선인 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렸다.

조련 해산에 일본공산당은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고 비공식적으로 조련 내에서 특수활동을 하는 자는 일본공산당통제위원회가 이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재일조선인 운동은 당분간 일본공산당의 지도에 의해 활동하게 되었다. 일본당국이 조련에 대한 전격해산은 성공하였으나 이것은 오히려 민족성의 강화 시켜 주는 결과는 가져왔다. 당시 일본 경찰이 조련에 대해서는 무력적인 해산을 시도한 반면 일본공산당에는 손을 대지 않았으며 이로써 조련은 일본공산당의 벗어나 자생력을 갖기 위해 움직이게 된다.

조련의 해산은 민전으로 이어지는데 민전 결성을 위한 중앙준비위원회는 이미 조련 해산 직후인 1950년 6월1일 개최되고 8월 15일 결성대회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5일 비밀리에 중앙준비위원회가 결성대회를 준비하였고 1951년 1월9일 일본 전국 부와 현의 대표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전결성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준비위원장 김훈은 정세보고를 통해 미국, 일본, 국내 소수 매국노를 주적으로 상정하고 이들과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고 특히 강제송환 움직임에 대해 단결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민전의 강령을 보면

1. 우리는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일체의 외국군대를 조선에서 즉시 철퇴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인민의 생활옹호와 인격, 거주의 자유, 재산을 박탈을 반대한다.
3. 우리는 민족문화를 위해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함에 전력을 다한다.
4. 우리는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민족의 분열 책동자 및 매국분자를 소탕하고 반동분자를 타도한다.
5. 우리는 일본을 아세아 침략의 기지로 하는 군사화 반대와 전면 강화체결에 전력을 다 한다.
6. 우리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위한 원자병기의 제조 사용에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세계국가를 제창한다.
7.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수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민전이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수한다고 하여 그 성격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것은 재일조선인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친북적인 단체의 성격을 공식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민전의 친북적인 성향과 이승만 정권의 타도에 일본공산당이 60만 재일조선인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며 문제제기를 했으며 조직의 성격은 점차 공화국과 일본공산당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라는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51년 12월 고베에서 개최된 민전 2차대회에서는 의견 충돌로 발전하게 된다. 결국 일본공산당의 민대부 의견이 받아들여져 강령에서 언급된 공화국에 대한지지 입장 표명은 유보되었다. 그러나 5개월 후인 52년 5월 민전 6차 확대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재론되었다. 이를 통해 유보되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고 이와 같은 내용은 같은 해 12월 개최된 민전 3차대회의 강령에서 공식 표명된다.

이 외에도 강제추방과 강제격리 반대, 조선인학교 사립 이관 반대, 한일회담 분쇄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대회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민단 부의장 출신인 이강훈이 의장단 명단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민전이 결코 이전의 조련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조국의 위기를 두려워한 광범위한 사람들의 결집체였다고 할 수 있다.

53년 8월25일 열린 11차 중앙위원회에서 민전 노선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결정된다. 일본공산당의 지도 아래 일본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방침이 올바른가를 두고 재일조선인으로서 당장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강해졌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민전은 대중조직으로서 독자적인 유지를 해야만 했으며 일본공산당이 당면한 집회에 동원을 요구하면 적당히 대응하여 내부적으로는 조선인 조직으로서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55년3월 민전 19차 중앙위원회에서 한덕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성격과 임무]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먼저 민전 지도부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었다. 한덕수

의 주장이 지지를 받게 되며 민족대책부인 김충권 서기장의 과거오류에 대한 자기 비판을 끝으로 민전을 해산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재일조선인총련합회(총련)를 조직할 것과 민전 해산선언을 발표하였다.

<건청의 결성과 해산 민단의 움직임>

1945년 11월 재일조선인건국촉진청년동맹- 건청의 발족으로 인하여 조련이 좌파 중심으로 운영되어 가는 것에 반대한 학생,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의 소수 그룹이 건청을 만들었다. 하지만 건청은 민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조련 중앙의 행동 방식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길을 주장했다. 48년 민단에 반발하여 떨어져 나갔으며 건청은 해방 직후 반조련적인 운동을 눈에 띄게 한 단체로 그다지 강한 대중적 기반을 갖지 못한 소수의 활동적인 청년이 모인 작은 조직이었다.

46년 4월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이 정식으로 발족하고 이것이 48년 8월 이승만 정권 아래 대한민국 성립 직후 10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개명되었다. 조선거류민단이 만들어졌을 때 단장은 박열이었으나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개입이후 초기 민단의 핵심 인물인 박열, 이강훈 등은 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조직변화하면서 떨어져 갔다. 이승만 정권은 이를 대신하여 바뀐 담당자가 이승만의 생각과 구상에 따라서- 이때는 이미 전전의 대일협력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이승만 정권의 충성도가 상부에서의 편성 기준이 되었다.

이와 같이 건청이나 박열은 해방 직후 조련에 강하게 대립했는데 48년 이후에는 오히려 이승만 정권에서 이탈 조련 활동에 접근해 갔다. 46~47년경에도 박열에 말에 따르면 사회주의자가 지도하고 있어도 대중단체인 조련에 성의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조련이 교육이나 귀국 문제 등 일상적 활동을 상당히 건실하게 하고 있는데 애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으며 1947년3월 21일 민단신문 담화에서는 거류민단은 아직도 조련을 반동단체로 단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련에 반동분자가 없는 것은 아니나 조련 전체의 행동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며 조련이 조국 동포를 위해 이바지한다는 정신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오늘날 민단의 역사를 회고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조련을 출발점으로 생각해도 될 듯 하다. 결국 48년 단독 선거가 실시되고 이승만 정권이 발족하고 곧바로 이승만은 미점령군의 주선으로 일본에 오게 된다. 이승만은 사상이 다른 박열 등이 중심이 되어 있는 민단을 자신의 통솔 아래 두려고 했으며 이것 역시 잘 되지 않아 박열은 49년 단장을 사임하고 본국으로 가 버린다. 사실은 뜻대로 되지 않아 추방당한 것이며 박열은 48년 이후 김구를 모든 점에서 정치적 지침으로 삼고 있었다.

이후 조련에 해산명령이 내려졌을 때 민단의 움직임을 보면 1949년 민단은 해산에 대해 항의 성명으로 맞부딪쳤다. 조련과 여러 가지 문제에서 대립하면서 한편으로 대립 상대인 조련이 점령군에 의해 해산당하는 것에 대해 항의 성명을 내었다. 결코 지금과 같이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관계는 아니었다,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같은 민족단체라는 사고가 박열 지도의 단계에서는 확고했고 조선전쟁이 시작되는 때에도 상당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조선전쟁의 과정에서 본국의 상황에 따라 뚜렷하게 양자의 대립이 깊어져 갔다. 특히 민단은 조선전쟁 개전 이후 조련이 민전, 조방대로 반미투쟁을 전개하여 본국과 연계되었던 것에 반해 한국에 지원병 파견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양자의 대비는 너무나 비극적인 대립으로 이어진다.

재일한교자원군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군의 참가를 지원하는 청년을 모집하여 많지는 않으나 실제로 동원하였으며 이와 같이 본국과 위에서부터의 정치적으로 직결되는 활동에 민단은 열중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민단을 직접 조정하여 본국 민중과의 일체화가 아닌 인위적인 권력을 통한 형식적인 결합의 강화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총련의 결성>

1951년 민전이 조직되는 시점부터 논쟁이 있었던 일본공산당의 형식적인 지도에서 이탈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지도 아래 재일조선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전노선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였다. 이때 북한의 남일이 성명을 발표 당시 사회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이 북한 남일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지함으로써 일본 공산당은 남일이 언급한 재일조선인 운동의 방향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민전의 일본공산당과의 연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한 한덕수가 민전 제 19차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연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한덕수의 주장의 요점은 종래 민전과 같이 일본혁명의 일환으로 일본 공산당의 지도 아래 재일조선인 운동이 존재하는 것은 잘못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재외공민으로써의 운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본공산당의 당원이라면 거기서 이탈해야 한다는 등 개인의 생활 방식까지도 바꿔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민전이 추진해온 일들은 벽에 부딪쳤고 분단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운동의 재건을 남일 성명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쪽으로 굳어져 갔다.

이러던 중 1955년 5월 현재 총련의 조직으로써 출발하게 된다. 총련이 발족할 때 강령을

요약해보면,

첫째 조국의 평화통일과 독립을 위해 재일조선인으로써 기여할 것

둘째 세계사적으로 보편적인 과제인 평화 옹호에 열중할 것

셋째 일본에서의 거주에 수반하는 민족적 권리와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에 몰두할 것

넷째 공화국 공민으로써 공화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독자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이러한 강령아래 결성된 총련은 김일성의 교시를 통해 총련의 설립취지를 재확인하고 노선을 더욱 강화시킨다. 또한 1957년 4월 8일과 15일 런던을 경유해 북한으로부터 최초의 교육원조금과 장학금 1억2천1백만엔이 총련에 도착하게 되면서 한덕수와 주류는 권력을 강화하게 된다.

<한일회담>

1952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서명되어 일본의 주권회복이 예정되자 한일 양국은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는 물론 국교재개를 포함한 모든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에 착수하게 되었다. 일본측은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한국국적을 확인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한국 측은 동포의 한국국적 인정자체에는 의견이 없었으나 그들의 지위는 특수한 외국인으로 일반 외국인과는 다른 우대가 배풀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문제는 협정영주권과 강제퇴거의 문제였으며 특히 일본 출입국 관리령의 퇴거강제에 관한 규정 중 재일조선인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 사유는 빈곤자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일본의 생활보호법에 따라 일본정부로부터 생계보조를 받는 재일조선인은 9만명에 이르렀으며 일본정부로써는 생계보조비 지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한일회담을 통해 이루려했다. 일본 측은 생활보호대상자를 한국으로 귀국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1년간 유예를 통해 한국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1965년 6월22일 체결된 한일협정은 일본국적을 부인당하고 일본에 당분간 살 권리만을 인정받았던 재일조선인들은 법적지위 협정을 통해 일본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다. 협정영주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퇴거사유에 해당되면 강제 퇴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한일회담은 한국국적을 가진 민단 동포들에게는 법적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총련 동포들은 일본이 북한과 미수교한 상태이므로 추방불가 상태가 계속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법적 보장과 규제가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적용되는 것을 이용해 민단은 조직 확대를 도모하는 경향으로 나아간다. 이전에는 조선적을 가진 동포가 많았는데 이 시기 양 단체가 유사한 규모가 되어 본국의 남북 대치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대치하게 된다. 이러한 대치 상태는 격렬하여 민중을 정치적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심경으로 몰아 넣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양 단체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층이 한일 조약 전후 증가해 왔다.

총련에서는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는데 매월 중앙대회가 개최되었고 어떠한 대회에서도 한일회담 반대운동 문제가 주의제로 다루어졌다. 분단을 고착화, 조선적 재일동포의 권리를 박탈, 미국의 동북아 군사동맹 결성의도, 일본 자본의 남한 재침투 등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였는데 특히 [외국인 등록]을 통해 재일조선인에게 [한국국적]을 취득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협정으로 재일동포 상당수가 친북적 태도에서 생존을 위한 남한국적으로 이동하는 요인 이 제공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국적관계를 명확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한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총련은 무국적자로 전락하게 되었고 법적 지위가 취약해졌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민단만을 재일동포로 인정하는 정책은 재일조선인 사회에 분단을 조장하고 총련과 대립관계를 조장하는 도구로써 민단을 설정하게 된다.

<민족교육>

민족교육은 북과 총련을 강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단계 동포에 비해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고 총련이 민단에 비해 웅집력이 강한 이유가 민족교육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총련이 민족교육을 총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민족교육을 통해 총련 활동의 재생산을 보장받고 있으며 교육에 관심이 많은 재일조선인과의 관계 또한 민족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족교육이 있기까지 북한의 교육원조비 지원은 총련 사회에 대단한 것이었다. 우선 자녀들에게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칠 수 있었고 이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재일동포 사회에 적지 않은 교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대중들에게 북한의 영향력이 깊이 파고들게 하였다. 오늘날까지 북한과 총련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추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정리하며

재일조선인의 역사에서 보듯이 총련과 민단은 조련에서 태동하였으며 입장의 차이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현실과 같이 대립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총련의 해산 명령에 민단에서 항의성명서를 내고 재일조선인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재일조선인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영향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도구로써 이용되고 정책에서 배제시킨 결과 일본에서 공생, 공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된 것은 한국정부의 크나큰 역사적 과오이다. 현재의 재외동포법 또한 조선적 동포를 배제시키고 이데올로기적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여 외교적 자원이자 통일 시대 함께 할 재외동포로써의 총련을 적으로 상정하는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 재일조선인 사회를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재고되어야 하며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부록

<재일조선인과 민족주의>

한국 축구 경기에서의 붉은 악마들과 국민, 해외동포들의 응원은 우리의 집단주의와 민족주의를 세계에 보여주었다. 다민족 다문화 국가에서 스포츠는 민족주의의 표출 수단이며 이를 대신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세계화에 스포츠를 통한 민족주의의 표출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시대에 맞는 열린 민족주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민족주의라 말하고 있다.

붉은 악마의 월드컵 응원을 계기로 한국인과 재외동포들의 단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타국가를 응원하는 여유와 약팀을 응원하는 배려를 보여주었다. 이를 공통된 욕망의 표출을 위해 단합된 민족주의라 표현한다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민족주의는 월드컵 응원을 통해 형성된 민족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외침에 의해 단합된 방어적 민족주의였고 외압에 의해 분단된 현실에 저항적 민족주의였다. 물론 우리의 역사에서 형성된 민족주의가 이렇다 하더라도 편협하지 않고 우리 안에 닫혀 있지 않은 열린 민족주의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의 외침이 아닌 국제사회와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타민족과 문화를 인정하며 공생 공존하는 관계이다. 국적의 변경이 자유롭고 다문화가 인정되는 세계화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민족관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은가? 북녘의 동포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면... 우리 사회가 외압에 의해 분단된 사회가 아니라면... 이러한 바램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에 우리의 민족주의의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듯 하다.

그렇다면 이런 세계화의 흐름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민족주의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생각 해 봄야할 듯 하다. 하나는 상위개념으로 외압에 의해 분단된 상황에서 지향해야 할 민족주의이며 하나는 하위개념으로 위에서의 예처럼 스포츠를 통해, 또한 세계화의 흐름과 다민족, 다문화 시대에 걸맞는 민족주의이다. 즉 우린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협연 공동체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피하고 타민족 타문화를 인정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조선반도의 통일에 대한 열망도 필요한 것이다.

재일조선인도 위의 상황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재일조선인의 민족주의 또한 일본의 탄압과 배제에 의해 형성되었다. 일본 내에서 소수민족으로써 조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류로써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나 최소한의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며 재일조선인에게 있어 서도 상위개념의 민족주의란 우리가 분단되는 않은 상황처럼 불필요한 것이었을 것이다.

일본에서 하위개념의 열린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다문화와 다민족을 이야기하지만 일본 사회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국적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상위개념의 민족주의는 재일조선인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위개념만을 생각하는 것은 일본인과 재일조선인과의 평등한 공생 공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기억나는 재일조선인 어록>

○우린 민족의 파편이야? - 재일조선인 상공인

○통일되면 한국에 간다. 내 고향에 까다로운 절차 밟아가며 가고 싶지 않다?
- 재일조선인 1세

○형! 만약에 내가 비행기 사고 나면 사망자 명단 나올 때 난 일본에 나와? 아니면 한국에 나와?? - 재일조선인 3세

○한국에 유학 왔던 친구가 자진 한국 사람이 될 수 없다며 일본국적으로 바꿨어?

- 재일조선인 유학생

○한국과 일본이랑 경기하면 어딜 응원해야 할지 모르겠어? - 재일조선인 2세

○조선 사람이 술도 못하면 안돼지? - 재일조선인 2세

○(내질문)공화국에 처음 갔을 때 어땠어요? ?내 나라에 왔구나라는 생각 들었어요?

- 재일조선인 3세

○한국가서 조선말하면 사람들이 신고해서 끌려 가는거 아니야??

- 재일조선인 2세

○밥 먹었나? 잠은 많이 잤나? 아픈 대는 없나?? - 내가 아는 재일조선인 2세들

○이젠 우리 역 차별 한다?(일본인 직원보다 재일조선인 직원들한테 정이가고 잘해 준다며 - 재일조선인 상공인

○죽으면 고향에 묻혀야 하는데...? - 재일조선인 1세

○나 내일 한국간다? - 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재일조선인 1세가 농담으로..

○한국 사람이 왜 재일조선인 문제로 고민을 해요? - 몇몇 재일조선인들

○시간이 많이 흘러 일본교과서에 조선반도에서 건너 온 사람들이 이런이런 문화를 남겼다 정도 남을지 모르겠지요.. - 조선학교 교원

○경복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는데 사진만 보고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보고 가르쳐 주고 싶지요..? - 조선학교 교원

○세계 어딜 가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학교를 많이 만들고 가르치는 민족은 없다. 그것도 일본에서...? - 조선학교 교장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신을 '조선인'이라도 말했던 동포는 있어도 '한국인'이라고 말한 동포는 없었던 것 같다. 나도 '한국에서 왔다고'는 한 것 같은데 '한국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 <끝>

일본국 거주 시민으로서의 재일조선인 문제

배지원

KIN일본위원회 실행위원
jwbae817@hotmail.com

I. 들어가며

I - 1. 귀화하지 않는 일본 사회의 구성원-재일조선인

소위 재일조선인 문제는 그 역사적 경위와 일본 내 정주경향의 강화로 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대부분의 제국주의의 피식민 국가의 국민은 식민지배 국가에서 거주할 경우 그 나라의 국적을 계속하여 인정받거나 국적을 취득하므로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법적으로 국민적 대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60여만 명의 재일조선인은 한국적 내지 조선적을 지키면서 일본 국적 취득을 거부하면서도 사실상 일본에 자손을 내리고 정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 특수성이 있다.

이른바 '귀화(歸化)'라는 것을 거부하며 일본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재일조선인 운동은 많은 좌절과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 일본정부는 해방 후 '배제(排除) 아니면 동화(同化)'라는 논리의 정책을 고수해왔고, 최근 재일조선인의 지방참정권 요구에 맞서, 까다로웠던 국적취득 심사 절차를 완화시킨다는 귀화 촉진의 저의가 깔린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각종 제도적 인습적 차별을 피해 재일조선인의 일본 국적 취득자는 90년대 들어 매해 1만 명을 넘고 있고 그 규모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의 역사성에 대한 자국의 반성과 책임을 기피하고 '국적'을 이유로 그들을 사회 참여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이것은 재일조선인의 귀화 거부의 이유이기도 하며 역설적이나 귀화의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선적을 버리지 않고 일본 사회의 정주외국인임을 인정하고 일본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살겠다는 운동은 재일조선인 2세 이후 본격화되어 지금도 줄기차게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본社会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개선된 것도 사실이나, 입주·임대거부, 취업차별, 용자거부, 골프클럽 회원가입 거부, 신용카드 해약 등 가시화 되지 않는 사회인습적 차별로부터 각종 공적 서비스 대상으로부터 배제, 지방참정권 부여 거부와 지방공무원 취임 제한 등 정치참가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다.

입주거부 등의 일본인에 의한 차별은 뿐만 아니라 조선인에 대한 편견에 의한 것으로 설명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와 교육이 강구된다 하더라도 쉽사리 회복될 것 같지 않다. 한편 취업차별 문제는 재일조선인의 생활과 직결되며 일본 사회 내에서 '시민'으로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생존권의 문제'로 특히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인생의 가치관과 자아실현과도 관계있는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재일조선인들이 느끼는 가장 실질적으로 치명적인 차별일 것이다. 취업차별 문제는 1970년 '히타치(日立) 취직차별 재판 사건 등을 통해 표면적이나마 개선되어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일례로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취직차별 재발 예방'을 목적으로 '도쿄 인권계발 기업연락회'와 같은 조직을 결성해 보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취업차별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대부분의 재일조선인 응시자들이 본명이 아닌 통명(일본명)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시험, 면접 단계에서의 낙방 가능성, 입사 후의 승진 제한과 귀화 권리 등 인습적 차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생존권과 직결된 경제적 문제가 표면적이나마 개선되어 온 반면, 거주 지역 운영에 결정적 요소인 지방자치에 대한 참가는 실질상의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일조선인은 각종 사회적 인습적 차별 속에서도, 사실상의 '주민'으로서 일본 사회 내에서 일본인과 동등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일본인 이웃과 어떤 형태로든 교류하며 살고 있고,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성도 이해하고 있는 이주역사가 약 100년이 되는 특수한 외국인이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지역사회에서의 의견 반영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분출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일본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I - 2. 본고의 목적-'그들은 시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본고는 '재일조선인이 일본 사회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얼마나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보편적인 의문에서 출발하여, 복잡 다양한 재일조선인 문제 중, 일본 사회와의 관계성, 즉, 일본 사회 속에서의 그들의 '시민'적 위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며, '일본 사회에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에 대해 궁정적 시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따라서, 여기서는 흔히 말해지는 '재일조선인은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느냐', '시민권을 획득하면 민족주의와 멀어진다' 등의 일본 사회 내에서의 정주외국인 혹은 주민으로서의 차별 논의에 착안하여 '시민'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 '시민'과 '재일조선인'과의 관계를 하나씩 짚어보고 재일조선인의 일본 사회 내에서의 정주외국인 혹은 주민으로서의 생활상을 조금이라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시민'의 기본조건인 경제권과 직결된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습적 차별은 존재하나 노동기준법 위반이라는 판례와 일본 사회의 표면적이나마 차별 반대의 움직임이 있어 제도적인 이의(異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따라서, 경제권과 더불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조건이자 권리인 정치참여의 권리, 즉 최근 이슈화되어 있는 공무원 취임 문제와 지방참정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필자가 이 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첫째, 재일조선인의 '시민'적 위상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임과 동시에, 지방참정권이 재일조선인 제반문제의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고, 둘째, 찬반 논의가 침예한 현안으로써 일본의 반대를 위한 주장과 논거 속에 숨긴 의도와 방향성을 파헤치기 위함이다.

II. 공무원 취임 문제

II-1. '당연의 법리' vs. 헌법, 노동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참정권과 공무원 취임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정치참가의 기본 방법이다. 국적을 이유로 민간기업 취업도 힘들었던 재일조선인은 1974년 히타치 투쟁이 승리로 끝나자,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의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서도 노동법 위반의 차별문제로써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 결과 우체국 우편배달직, 지방자치체 병원 간호전문직의 국적 조항 철폐가 각각 1985년, 1986년 이루어졌고, 1996년에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川崎市)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에 있어, 직종과 승진의 제한이라는 조건하에 그 때까지 폐쇄되었던 일반사무직의 국적 조항 완전철폐라는 자청 획기적인 발표를 하였다. 한편 국공립학교의 교원 채용에 있어서도, 대학 교수직의 경우 1982년 '국공립대학 외국인교원 임용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초중고교 교사직은 1991년 강사 신분만의 인정으로 제한적이나마 문호가 개방되게 된다.

그러나 일본 자치성에 의하면 도도부현(都道府縣)과 6개 자치성 지정도시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은 1998년도에 4,512명으로 92년도의 1.8배로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일반사무직 종사자는 겨우 10명 뿐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직에만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일련의 문호 개방은, 일본 특유의, 형식은 갖추되 내용은 제멋대로 하는 얄팍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즉, 채용 후 여러 제한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단은 꿈을 품고 들어오게는 하되, 안에서는 마음대

로 못한다'식의 겉으로는 '공생', 안으로는 '차별'의 구도를 드러내고 있다. 직무와 승진 제한, 귀화 권유 등의 차별 구조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지문날인제도 철폐 등의 과거 운동에 비해, 비교적 작은 규모이나 재일조선인과 양식 있는 일본인들은 지방공무원법과 노동법, 헌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차별로 자치단체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와 일본정부는 '당연(當然)의 법리(法理)'를 유일한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 '당연의 법리'란 1953년 일본의 내각 법제국이 발표한 '견해'인데, '공권력(公權力)의 행사' 혹은 '국가의사(國家意思) 형성'에 관련성 있는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국적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다. 이 법률도 아닌 견해가 지금까지도 재일조선인의 교사직과 소방관의 꿈을 처음부터 묵살시키고, 같은 시점에 뛰기 시작한 동료들과 같이 승진하지 못함으로써 업무수행 의욕과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를 억압하고, 인간적 좌절감을 강요하는 유일한 논거라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한 예로 오랫동안 폐쇄되었던 지방공무원 일반사무직의 수험자격에서 소방직을 제외하고 국적조항을 철폐하여 개혁적 공생도시로 자타가 인정했던 가와사키시는 '당연의 법리'를 내세워, 과세, 위생, 소방 등의 182개 직무에 재일조선인을 배제시키고, 결재권이 있는과장급 이상으로의 승진을 제한하는 이른바 '외국인 임용에 관한 운용규정-외국인 직원의 '신나는' 인사정책을 위하여'라는 일종의 매뉴얼 내지 지침서를 내부 작성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가와사키 방식'으로 불리며 바람직한 채용 방법으로 평가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당연의 법리'는 헌법과 노동법, 지방공무원법과 관련법 등을 능가하여 재일조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정당화 수단이 되어왔다. 가와사키시의 이같은 정책이 국적을 이유로 한 민족차별이며 '운용규정'은 노동기준법에 위반됨을 지적하고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재일조선인과 일본인들의 모임인 '가와사키 연락회의'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이 모임은 가와사키시장 앞으로 (1)'운용규정'의 법적효력과 강제력, (2)노동기준법 3조* 위반여부, (3)182개 직무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거부 이유, (4)'당연의 법리'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독자적 판단의 기준('명령·처분등을 통해 대상인 시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권리·자유를 제한하게 될 직무'라는 정의)의 타당성, (5)'운용규정'을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는 은폐 이유, (6)'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직무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법원이 제시한 각 직무의 '통치작용'과의 관계성에 대한 검토 여부, 등의 공개질의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가와사키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 모임은 시 관계자와의 정기 교섭을 통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사회 전체의 우익 경향과 보수 우익적 사고방식의 소유자인 새 시장의 선출로 교섭과 운동의 과정이 매우 더디게 진척되고 있는 듯하다.

'가와사키 방식'의 민족차별을 제도화한 '운용규정'의 철폐와 그 밖의 모든 제한을 철폐

할 것을 요구하는 가와사키연락회의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본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관계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는 국적, 성, 사상, 신조, 종교가 개재할 여지가 없다. 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아도, 외국 국적이라는 점은 직무에 관계없고, 국장 층에서도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새어나오고 있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직무 분석과 182개 직무 선별에 있어, 통치작용과의 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점이다. '공권력의 행사'에 관계하는 직무의 구분에 대해, 1997년 정향균씨의 '도쿄도임용차별 재판'은 '그 직무의 내용, 권한, 통치작용과의 관계 및 그 정도를 각각 구체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외국인 취임이 인정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외국인 취임을 인정해도 상관없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적인 외국인 채용을 인정하는 요지의 판결을 낸 바 있다. 즉, 일률적으로 외국인을 배제한 '가와사키 방식'은 협법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시와의 교섭에서, 시 인사과는 통치작용과 182개 직무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모른다'고 실토향하고 있지 않은가.

II-2. '당연의 법리'의 중구난방 적용

일본 자치성은 '당연의 법리'에 근거하여 직무 배치와 승진을 제한하는 방식을 도도부현과 지정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도와 감독이 시장의 권한에 따라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다. 일본 당국의 '당연의 법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논리이며, 이 근거도 없는 논리에 의해 인생의 향방이 좌우되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얼마나 심각한 차별인지를 반증한다.

예를 들어, 가나가와현 이즈코시(豆子市) 과세과에서 자산세(資産稅)계에서 일하는 92년부터 일하기 시작한 재일조선인 3세 김명부씨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토지조사와 과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씨를 채용한 당시의 시장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은 시장이고, 직원은 그것을 보조할 뿐이다. 따라서 과세과 배속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같은 과과장은 '외국인이라서 어떠냐고 물어와도, 외국인이라는 의식이 이쪽은 없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김명부씨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자치성은 세금 평가와 징수는 공권력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도가 전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당황해 한다. 김씨는 '묵묵히 맡은 바 일을 정해진 규율대로 할 뿐,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느낌을 갖는 적은 없다'고 말한다.

시장의 권한으로 '당연의 법리'를 표면적으로는 수용하지 않는 후쿠이현 다케후시(武生市)는 99년 국적조항의 완전철폐를 선언하고 '당연의 법리'에 대해, '너무도 추상적이고 타

당성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당연의 법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는 임용과 배치 문제에 있어 '외국인 채용에 대한 시민 감정의 이해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일본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의 채용 후의 임용과 배치는, 주민자치의 의의를 인식한 위에, 임용권자(시장)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을 밝혀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의 각 개인의 직무 배치와 승진이 시장 개인의 개별적 판단으로 제한된다는 것은 '운용규정'만큼이나 자의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II-3. '일본을 위해 총을 집어 싸울 수 있는가?'

법무성 관료 사카나카(坂中英徳, 현 후쿠오카립국관리국장)씨의 '재일조선인은 일본인으로서 살아라'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일본 당국은 '국적에 의한 차별은 감수해라. 그것이 싫으면 일본국적을 취득해 일본인답게 살아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당국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데에는, 다케후 시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인들의 암묵의 동의가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본 사회 전체에 뿐만 아니라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시장이 타협하고 있는 구도라고도 볼 수 있겠다. 전술한 이즈코시에 채용된 김명부씨는 입사하자마자 그만두라는 협박 편지를 몇 통이나 받았다고 한다. 근래에 들어 이러한 일본 사회 전체의 우경화 추세는 이시하라(石原慎太郎) 도쿄도지사의 '제3국인' 발언에 대한 일본인들 대다수의 수긍 자세에서도 확인해 느낄 수 있다.

한 일본인이 던진 질문에 대해 재일조선인 3세 시사평론가 신숙옥씨의 대답을 인용해보겠다. 공무원 취임에 대한 일본인의 태도와 그 저변에 있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일본 특유의 '무라사카이(村社會)'적 사고를 읽을 수 있다.

한 일본인이 '재일한국인이 공무원이 되려는 것은 절대반대. 국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국가에 충성을 맹세한 인간이다. 민족은 국적을 넘는 개념이며 일본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다고는 볼 수 없다. 재일한국인이 일본 정부에 정치적 요구를 한다면 서둘러 일본국적을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공무원 취임을 반대한다'라고 하자, 신숙옥씨는 이렇게 반문하여 정곡을 찌른다. "국가에 충성을 맹세한 인간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당신이 말하는 '국가'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충성의 맹세를 받은 것은 실은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주장은 결국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본래 공무원이 충성을 맹세해야만 하는 '국가'라는 것은 그 나라의 이념으로서의 국가가 이념일 터입니다. 그리고 국가 이념은 헌법이라는 형태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헌법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거꾸로 헌법에 충성을 맹세

한 자라면 누구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헌법을 적시하고 헌법의 이념을 짓밟는 무리들이 국가의 중추부에서 권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를 '이상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일본국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1982년 지문날인재판 당시, 등록과장 가메이씨는 '일본국민이란 일본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총을 집어들고 싸우는 사람입니다'라 했다. 일본 '국적'의 필요성은 전쟁 위기 시의 재일조선인의 선택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에 대한 표출로 주장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한일전쟁이 발발하면 어찌겠냐는 이야기이다.

재일조선인이 조국사람인 한국인을 살상할 수 있겠냐는 섬뜩하면서도 어처구니없는 질문에 대해 신숙옥씨는 이렇게 대답한다. "국민국가(國民國家)의 사상이 뱃속까지 배어든 이들의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위기적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재일조선인을 죽일 것이다. 재일조선인은 일본인에게 총을 겨누지도 못할 것이고, 조선반도에도 겨누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일본인에게 죽음을 당하거나, 한국이나 북조선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전쟁이란 그런 것이다. 전쟁이 나서 한국적이면 한국 측에 붙어서 일본인에게 총을 겨누고, 거꾸로 그 사람이 일본 국적만 갖게 되면 이번에는 한국인에게 총을 들이댈 것이라 생각하는가? 겨우 국적 하나로 극한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선택을 바꿀 정도로 인간의 마음은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는가? 많은 재한일본인이 한국의 행정에 참가하고 많은 재일조선인이 일본의 행정에 참가하게 되면 오히려 양국간의 전쟁 같은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이질 것이라는 발상은 해보지 못했는가?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진보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II-4. 일본의 배제·억압·동화주의

그렇다면 국제조약이나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국제인권규약(B) 제25조 3호와 미주인권규약 제23조 1항 3호, 아프리카 인권헌장 제13조 2항 등은 평등한 조건하에 자국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주체는 모두 '시민'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서구에서의 '시민'의 개념은 보통 제한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국적'의 범주를 종종 넘지 못한다는 것이 해석의 주류를 이루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이 외국인의 공직취임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국제인권법이 공직취임을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여도, 유럽에서 지방공무원 취임이 '주민'의 개념에 대한 풀이와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외평등사상'은 계속 확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재일조선인들이 거론하는 것은 중앙공무원 채용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직무의 구별이 있다면 그 명확한 법적 기준을,

차별이 있다면 철폐하는 것이 재일조선인과의 공생의 진정한 의미이고 인권 존중이며, 나아가 과거에 대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일 것이라는 것이다.

배제 논리와 '통치작용'과의 관계성과, 그 관계성의 정도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논리의 직무제한 지침서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공직으로부터 외국인을 배제시키는 법규는, 전술한 법원의 판결내용과 같이, 배제의 목적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이고 불명확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원래의 목적에 따라 정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가와사키연락회의나 신숙옥씨 등의 지적처럼,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기본적으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지령에 의하여 직무를 담당하는 것 이외의 의무를 지지 않는' 가능적 존재*로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공무원이란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므로 지방공무원의 일차적 업무는 해당지역의 주민과 관련되는 행정으로, 그 대상자도 해당지역 출신의 '국민'이 아니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일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이란 市, 町, 村에 주소를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제10조 1항), 여기에 국적은 전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모든 공직 혹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에 있어 국적을 문제시하지 않는 사실은 일본의 지나친 폐쇄 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히타치 취업차별재판의 주인공인 재일조선인 2세 박종석씨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외치는 '공생'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어, 가와사키시는 '인권과 공생의 거리'라고 목청 높이 외치면서 당국은 무슨 이유로 많은 조선인이 일본에 살고 있는지, 한일역사에 대해서 아는 바도 적고, 관심도 없으며, 자신의 삶과는 관계도 없을 뿐더러 '조선인은 믿을 수 없다', '조선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면서까지 같이 일하기 싫다'라는 차별적 감정이 근저에 있는 것이다".

공무원 취임에 대한 이상의 태도에서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이 배제와 억압, 동화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와사키 방식'이 '획기적으로' 발표된 96년에는 23년만에 자위대 모집업무가 재개되었고, 98년에는 시민단체가 상영하려 했던 '남경학살1937'이 우익단체의 방해와 시 측의 장소 변경 요구에 중지가 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하였다. 그 뿐이던가. 국기게양과 국가제창에 대한 사상 설문지가 각 학교에 배포되는가 하면, 최초의 재일조선인 취업차별 운동이었던 히타치 투쟁이 시 발행 홍보물 등에서 삭제되기도 하였다. 가와사키시는 교묘한 방법을 통해 '공생'을 외치며 동시에 철저하게 '배제, 차별'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갖가지 불편함과 차별을 받으며 그나마 민족을 고수하고 역사를 지키는 방법은 '국적'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처절한 상황까지 온 세계 유일무이의 정주외국인. 이제는 일본

정부, 사회의 차별과 억압, 동화주의를 베기지 못한 이들이 귀화를 현실적 선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역사적 책임을 일본은 끝까지 회피하려 하고, 도리어 전쟁시의 재일조선인의 일본인 공격을 두려워하는 일그러진 심상으로 그들에게 일본인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은 돈과 위생 업무에 관련되어서는 안 되고, 일본인과 직접 접촉하는 일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 속에 일본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시각이 모두 드러난다.

III. 참정권 문제

III-1. 정주외국인의 기본적 인권

일본 사회 내에서의 재일조선인의 활발한 인권운동은 조국지향적이던 1세와 달리 2세 이후 후손들의 정주경향을 보여준다. 차별을 수용하던 1세와는 달리 그 후손들은 차별에 대항하고 일본 사회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만큼 권리도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겠다는 태도를 강하게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재일조선인이 이러한 운동에 찬동하는 것은 아니다. ‘백 명의 재일조선인이 있다면, 백 가지의 삶의 형태가 있다’라는 말이 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특히 총련은 공식적으로 ‘내정불간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해외공민’을 원칙으로 조국에 돌아간다는 점을 대전제로 하여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과 계승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움에 따라 각종 인권운동의 ‘동화(同化)’적 요소를 비판해왔다.

그러나 의무를 다하는 구성원 개인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치 행위에 대한 참가에서 배제되어 있다면, 그 개인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운영방식의 기본은 선거이며, 사회 구성원은 최대한 자신의 삶과 지역 내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보다 완성시키는 전제조건이 아니던가.

재일조선인이 마을의 주민투표조차도 거부당하면서 지방 레벨에서의 선거권을 요구한 지 약 15여 년이 흘렀다. 실질적인 주민으로서 생명과 생활을 뿌리내리고 있는 생활터전에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운영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까지 하다. 물론, 민주주의 사상의 계보를 학술적으로 파헤쳐 민주주가 국가의 틀 안에서 생겨났고, 그 안에 속한 권리주체인 ‘시민’은 반드시 외국인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있는 점도 간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갖는 취지는 주민의 의사와 책임에 따른 자주적 행정이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고, 실제 자치체 운영주체는 국민이라기 보다 실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이같이 주민의 국적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일정기간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들이 실제 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3년 이상 거주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5년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 그 밖의 나라들 역시 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원칙, 외국인 투자 유도,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인권적 배려 등, 나름대로의 상황에 맞게 제한적이거나 완전한 지방 참정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1993년부터 가맹국 국민을 유럽연합 공동체의 ‘시민’으로 규정하고, 유럽의회 참정권, 청원권, 현 거주지에서의 지방참정권 등의 권리 부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1999년 유럽연합 선거에서 프랑스 녹색당은 독일 국적 당원을 선두로 입후보시켜 당선시키기도 했다.

그 나라에서 언어소통이 부자유하고 그 사회와 사정에 어두운 일반 외국인에 대한 국정 참정권 부여 반대론을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자아실현을 꿈꾸며, 가족을 일구고, 자손을 키우고 있는 재일조선인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국적’을 바꾸기만 하면 참정권을 주겠다는 식의 논리는 더욱더 본말전도이다.

III-2. ‘참정권 부여는 망국의 길’

일본은 국정, 지방 참정권은 고사하고 급박한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에도 재일조선인을 배제하고 있다. ‘국가의사 형성’에 관계된 일이라 보기 때문이다. 재일조선인과 일본 내 영주외국인인 영국인 등에 의한 거듭되는 기소 사건을 통해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된 사건이 있다면, 95년 일본 법원의 판결 내용이었다. 이 역시 패소로 종료되었으나 반대론자들의 종전의 ‘위헌론’에 쇄기를 박은 판결로, ‘전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며, ‘지방자치체와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일외국인의 경우는 그 의사를 지방행정에 반영하게 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대표나 의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참정권 운동에 섬광을 드리우는 듯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헌법상의 ‘주민’에 대한 해석이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국회에서 결정되는 경우 참정권 부여가 가능하다는 취지였으나, 지금까지 참정권은 법안의 국회제출과 기각을 반복했으며, 현재 1년 이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1998년 한일 정상회담 후 우호 분위기를 통해 민단의 운동이 한층 활발해지고 한국정부의 강한 요구도 전달되어, 1999년 최초로 공명당, 자유당, 자민당에 의해 ‘조선적’ 배제라

는 문제점이 지적된 '영주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법안'이 큰 화제 속에서 제출되었고, 낙관론이 팽배하였다. 그러나, 제출되자마자,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극렬히 반대를 표명하였고, 그 후, 2000년에 다시 제출되었으나 통과하지 못하였다. 현 고이즈미 정권은 총리가 직접 '귀화하고 싶지 않다면 참정권을 바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 전쟁대비 관련의 각종 법제 제정의 움직임과 국내에서의 우경화 상황을 볼 때 참정권 문제는 완전히 물 건너 간 느낌마저 주고 있다.

참정권 법안이 제출 된 직후 정치가들의 발언들은 주목할만하다. 2000년 9월 '외국인 참정권의 신중한 취급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64명의 의원들과 전 법무부장관 대표로 구성되는가 하면 같은 달 자민당 내에서 '법안성립 정지' 결기 대회가 열렸고, 자민당은 '선거제도 조사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배타적인 반대론이 속출하였다.

반대론자들은 '망국의 길이다', '주변사태법이나 안전보장문제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 상 선거권은 일본국민에게만 부여된다', '국가의 근간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3당 합의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나라와 지방의 참정권은 분별 할 수 없는 것이다', '타국에 아부하며 정좌하는 것으로 해외에서 존경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잘못이다', '일본을 원망하는 영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일본을 분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등등의 발언이 잇달았다.

논의는 공무원의 국적조항과 마찬가지로 '당연의 법리'를 논거로 집약되었고, 결국 '선거권을 갖고 싶으면 일본국적을 취득하라, 귀화 조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귀화 촉구와 일본국적법 자체를 수정하는 소위 간이국적법안이 제시되는 사태로 키를 틀었다. 오히려 이들은 재일조선인은 '국제사회에서 보통의 외국인보다 유리한 특별영주자라는 지위까지 얻었지 않은가'며 재일조선인에게 일본은 지나치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어조의 발언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참정권 요구가 국적법 전환으로, 그리고 귀화로 귀결되면서 오히려 참정권 부여가 귀화의 미끼로 이용되고 있는 개탄할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III-2. 참정권 요구를 귀화의 미끼로

이 정도의 발언들이라면 단순히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 대한 보편적인 신중론이라기보다 재일조선인의 정치 참가, 그것이 지방레벨의 선거권만의 부여라 할지라도 나라의 앞날을 방해하는 '위험한 존재'로서마저 느끼는 것은 아닌가 싶다. 여하튼, 참정권을 절대 부여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들의 본심이다. 이는 귀화를 조건으로 부여하겠다는 단순한 주장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재일조선인이 귀화를 한다고 하여 그들이 완전하게 모든 민족적인 요소를 버리고 일본의 황국신민으로서 지방 선거에 임할 것이고, 그들이 곧잘 일본 국민의 정의로서 거론하는, 전쟁시에 어느 쪽에 총을 겨눌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도 재일조선인들이 단순히 조선반도를 향해 일본인과 함께 일제히 총을 겨눌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러한 단순한 논리 하에 귀화 조건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현실감각이 결여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일본 보수세력은 재일조선인이 현재 가장 시급한 권리 문제로 여기는 참정권 요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우선 재일조선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절대 없을 것이고, 이를 통해 차별의 고정화를 강하게 암시하면서, 동시에 귀화의 문은 전보다 개방함으로써* 귀화의 선택을 종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재일조선인 존재를 아예 말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된다. 사카나카(坂中) 등의 '재일조선인, 중국인 소멸이 너무 늦게 일어나고 있다'는 섬뜩한 발언 속에서도 국적법 개정과 참정권 절대 반대가 갖는 궁극적 계산을 읽을 수 있다.

III-3. 민단과 총련의 의견

한편, 일본 정부와 법원의 입장과 대치하고 있는 참정권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 채용 문제와 마찬가지로 재일조선인 내부에서도 찬반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민족성 유지'와 '공생과 인권'을 외치는 두 주장이 실제로 대치될 수밖에 없는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겠으나, 민단과 총련은 참정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일조선인 인권운동의 확대에 있어 빈번하게 '민족성'과 '공생'의 표현으로 대립하여 재일조선인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절름발이 운동을 전개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일본 사회와 정부에 대한 각종 요구 및 주장이 종종 완전한 설득력과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국 분단의 현실이 재일조선인 사회의 분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우선 참정권 문제에 대한 총련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두 단체간의 알력 관계가 혼란 자체에 대한 노선 차이만큼 논란의 중요한 뒷 배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련 간부는 '(총련이) 참정권 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중략) 참정권이든 어떤 문제이든 동포의 관심사라면 합의를 끌어낼 때까지 신중히 논의를 거듭하는 것이 정도이다. 민단이 참정권 문제를 갑자기 꺼내어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는 일정 부분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 현재의 민단 단장은 총련 세력을 압도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들을 흡수 통합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한 바 있고, 이를 위해 중요한 측으로써 참정권 획득 운동을 꺼낸 것이다. 동포의 진정한 권리옹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총련을 흡수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선행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데 총련 흡수라는 정치적 의도가 저변에 있는 동기가 불순한 운동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단은 '(중략) 귀국선을 타고 (북조선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최근에는 거의 없다. 재일조선인 대부분이 이 나라에 영주하고 있고, 참정권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총련의 일부 간부는 참정권 획득 운동이 성공하면 북조선에 대한 귀속의식이나 충성심이 회복해지고 총련이 민단에 흡수, 통합된다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 권리제한이 귀화를 촉진시키는 측면을 직시해야만 한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참정권 운동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로 총련은 민족성 유지가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은 반대로 동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일동포를 "일본사회로의 참가"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정당정치와 그 이해관계 속에 끌어들여 민족적 단결을 약화시키고, 민족적 기반을 붕괴하는 한편, 조국과 민족과의 관계를 더욱 회복하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동포를 전과 같이 "뿌리없는 풀"로 만드는, 되돌릴 수 없는 동화의 길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화 촉진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민단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편다. '결코 동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지역의 재일조선인의 권리보장을 실현해 줄 입후보자에게 투표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동화로 가는 한 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오히려 재일조선인의 민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발언권의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참정권 획득은 각자의 국적을 보유한 채로, 일본사회에 참가하여 권리확대를 꾀하는 운동이다'.

총련의 우려에는 또 한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참정권 법안들이 보수정치가들의 북조선 알레르기를 고려한다는 취지로 대부분 '조선적'을 배제한 '한국적'에게만 한정되는 차별적인 내용이라는 점이다. 즉,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조선적 재일조선인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한국적 취득자가 더욱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이 총련 조직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

원래 이 법안의 조선적 배제 내용은 많은 비난을 받았다. 재일조선인에게 있어서의 국적은 반드시 지향성과 일치하지 않으며, 조선적은 국적의 개념이 아님을 간과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법안 작성의 주체가 재일조선인 자신들이 아니었고, 더욱이 총련과 민단 두 단체를 포함해 동포 사회 내부에서 사전의 합의 둘출 역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총련의 참정권 부여 반대에는 이처럼 일본 정치계의 조선적 차별, 민단과의 조직적 관계 등의 상황이 배경에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재일조선인을 위한 권리 운동의 어려운 점은 이처럼 두 조직 혹은 재일조선인 사회 내의 상이한 의견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지난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민족단체가 좀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협의과정을 소홀히 해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노선의 일치가 기대하기 어렵다면 상대의 주장을 다소나마 존중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정권과 동화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시시비비에 대해서, 민족적 제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각종 투쟁을 공동으로 펼쳐 참정권의 동화 가능성 지적에 대한 보완적 방법을 강구하는 시각은 수용될 수 없는 것인가. 민족성을 계승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민족학교 설립과 운영 문제에 있어 민단과 총련이 동포 모두의 민족권 보장을 위해 상호존중 위에 공조하는 일이 이데올로기 상 절대 불가능하기만 한 일인가. 물론 제안만큼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민족성 유지를 방해하고 동화를 강요하는 것은 일본 정부이고, 일본 사회이며 두 조직의 이러한 표면적 대립을 이용하는 것 역시 일본 당국임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III-4. 또 다른 의견

참정권 문제에 대한 재일조선인의 다양한 의견은 앞서 본 것처럼 권리 신장과 생활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 민족성 상실, 동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 그 외에도 회의론이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한 재일조선인 가족의 대화는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다양한 시각과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가방 공장을 하는 홍원연씨(58)는 한국적 2세이다. 그가 '의무를 다하는 이상 할 말이 있다. 구 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다. 거래처에 민단 관계자들 천 표 정도는 어떻게든... 역시 피선거권도 갖고 싶다'고 말하자, 사촌은 '의원이 될 수 있다면 취업 차별도 없어질 것이다.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화를 잇는다. 그러나, 공장을 돋는 차남은 냉담하다. '참정권으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는 얼마 전, 국적을 이유로 취직을 거절당했다. 일본인 여성과의 결혼도 상대방의 부모의 반대에 부딪쳐 힘들었다.

'우리들 숫자는 아주 소수다. 참정권으로 벽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한국적을 버리면 어떻게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사는 계속 지낼 것이다.' 그러자, 아버지 원연은 '국적은 민족의 증거다. 너는 국적 말고는 다 충분히 일본인이 되어 있지 않은가. 적어도 참정권을 대등하게 갖은 후에,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선택하면 된다'고 아들을 꾸지람한다. 참정권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순기능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은 일본 사회의 뿌리깊은 차별의식을 반증한다. 취업차별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론이 있는가 하면 취업차별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병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남은 귀화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으로 생각하게 되기까지 이른 것이다.

III-5. 우경화와 재일조선인 인권유린

낙관과 비관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총련의 입장은

비롯해 참정권 부여 그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 운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본의 법원은 지방 선거권을 헌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전적으로 입법재량의 문제라는 해석을 내렸고, 실제로 일본 보수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자격을 인정하는 자치체가 올해 세 군데로 늘어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3월 사가현의 마이하라쵸를 시작으로, 기후현의 고잔쵸가 근린의 시쵸촌 합병 문제에 관한 주민의향 조사에 있어 영주외국인의 투표자격을 인정하였고, 이어 아이치현의 다카하마시가 투표자격과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청구자격까지 인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지방 선거권에 앞서 주민투표에도 참가하지 못했던 상황이 다소 개선되면서 조심스런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 반대자들은 '당연의 법리'와 '위헌론'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비(非)국민', '국적(國賊)'으로 몰고 있는 지경이다. 게다가 최근 공안조사청(公安調查廳)은 전국의 재일조선인 600명 가량의 외국인등록원표(原票) 복사본을 각각의 자치체에 비밀리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유사법제', '테러지원법', '주변사태법' 등 각종 전쟁준비 법안 통과에 협안이 되어있는 작금의 상황은 참정권 부여를 검토하기는커녕, 재일조선인을 잠재적인 범죄자 혹은 국익을 해치는 위험한 존재로 취급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마저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정권 획득 운동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일본이라는 시계 바늘에 갈기갈기 찢길지도 모른다. 그 바늘은 귀화하지 않은 재일조선인들의 시계 바늘도 야금야금 퇴행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부러뜨려 정지시킬지도 모른다.

IV. 나오며

'시민'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독립한 인간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며, 전근대적인 미망(迷忘)이나 비굴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생활태도를 갖고, 각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입장에서 발언하는 태도를 갖으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지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현대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백과 사전 정의가 있다. 덧붙여, J 로크는 시민사회라 함은 '생명과 자유, 재산이라는 개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며, 이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적 결합이고, 국왕이나 정부는 이 시민사회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통치자 또는 행정부일 뿐'이라고 정리한다.

필자는 본고를 쓰는 과정에서, 실제로 재일조선인 문제에 접근하는 운동에 있어 '시민'의 개념이 그다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 이유는 '시민'은 법리적 개념이 아니어서, 보편적으로 국민국가의 '국적'을 극복하는 개념으로써의 논거로는 명쾌한 해석을 내

리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재일조선인이 '일본 사회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일본인과의 공생 단계에 접어들었는가', '시민권을 얻으면 민족주의적 경향은 약화되지 않는가' 등의 '시민'적 논의를 접한다. 이러한 논의는 '시민'이 갖는 절대권력에 대한 권리투쟁의 역사성과 역동성을 정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일본사회와의 관계 설정 과정에 중첩하여 생각하는 시각을 깔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빈번하게 들게되는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시민'개념의 효용뿐 아니라, 대답의 일부를 견겼다고 믿는다.

즉, 재일조선인은 시민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시민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일본어를 조국의 언어보다 유창하게 구사하고, 일본문화의 접촉과 일본인과의 교류가 더 자연스러울 정도로 동화가 진행되어 와 얼핏 일본인과 사이좋게 잘 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내막은 그들은 철저히 사회 안으로의 진입에 차단되어 있고 이 차단은 '흡수' 아니면 완전 '배제'와 '이지매'로 궁극을 치달을 것으로 진단된다. 공생단계에 접어들기까지는 혐난한 고개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반복해 강조하지만, 일본 당국의 태도는 선진국들의 일반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이민족과의 공존이라는 인류공통의 이념에 배치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후처리에 대해 납득할 만한 적절한 보상조치를 방기하며, 과거의 숙명적 산물인 재일조선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지워버리려 애간장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조차 한다. 일본당국의 정책과 제도 뿐 아니라 일본인 일본사회 전체의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뿐리깊은 차별의식 역시 당혹스럽다.

일본은 재일조선인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강구하는 실패했으며, 거꾸로 파렴치한 역사인식을 계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그들이 생존을 위해 '일 하고', 생명과 생활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지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행위는 기본적 인권이다. 일본국의 국익에 배치된다는 지나친 상상력과 논리의 비약을 경계해야 한다.

모든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 국적을 강제 선사해, 어느 날 그 모두를 일본 속에 흡수해 버린다 하여도, 일본의 재일조선인 문제는, 일본의 '국가적 이념'과 '국민성'에 관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례로 오랫동안 언급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일본 사회 내의 위상의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인권문제로서 상정되어야 할 것이다. 재일조선인들의 인간답게 살려하는 몸부림이 일본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한국 또한 뒷짐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계 시민단체들과 세계의 소수민족을 비롯한 국제적인 관심과 지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끝>

남·북한 및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참고자료>

1. 1996년,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서울대학교출판부
2. 2000년, 신숙옥, <재일코리안의 가슴 속(일본서적)>, 광문사
3. 1998년, 인터뷰기사, <노선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간지 「論座」, 아사히신문사
4. 2000년, 최승구, <국적조항문제란 무엇인가>, 허타치취업차별재판 30주년 기념집회 보고집
5. 2001년, 박종석, <우경화 속에서 더욱 교묘해진 일본의 민족차별>, 「사람이 사람에게」 3·4월호, 국제민주연대
6. 1999년, 사토다츠오, <일본국헌법탄생기>, 중앙공론신사
7. 1997년, 김찬정, <재일코리안백년사>, 삼오관
8. 2000년 2월, 연속기획기사, <이 나라의 사람들-외국인과 참정권>, 아사히신문

배덕호

KIN 집행위원

ssogaree2000@dreamwiz.com

I. 들어가며

KIN일본위원회의 <2002년 재일조선인 정기세미나 자료집>에 수록될 이 글은 필자의 경험적 한계로 인해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며 대부분 국내의 기존 자료를 요약했고, 약간의 의견을 덧붙였을 뿐이어서 부끄럽기만 하다.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남기고자 할 뿐이다.

이 글이 KIN일본위원회의 운동적 과제인 “20만 재일조선적 동포들의 입국장벽 넘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하다. 이 글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재일조선인’이라는 용어는, ‘1947년 일본정부의 외국인등록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국적란에 <朝鮮(조선)>이라는 표기를 강제로 부여받은 자 및 그 후손으로서, ① 현재 일본에서 특별영주권을 가진 자와 ② 일본국적을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II. 해집으며

2002년 정기세미나 주제 중 하나인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과 관련하여 필자는 재일조선인 통계 문제, 1952년까지의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한국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북한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변천과정 등의 소주제로, 기존의 학술 자료와 국내 정부부처 통계 자료, 그리고 민간단체 자료를 인용, 개괄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II-1. 재일조선인 관련 정부 통계와 몇 가지 문제점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일본 법무성 통계를 인용하며, 정부는 ‘재일동포 수를 총

640,234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매년 자국 체류외국인 통계를 낼 때, '한국·조선'으로 통합 발표하고 있으며, 구분된 자료 요청에는 불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일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순수 재외동포 단체인 민단 단원 수 약 43만명 및 우리 체류자 수 약 9만명을 감안하여, 조선적 재일동포수를 1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1년 외교통상부 여관과, '재일동포 및 재일조선인의 한국내 법적지위와 출입국에 관한 건'에 대한 KIN회신 답변서에서 인용함>>

그러나 이 통계 수치는 부정확한 것으로 첫째, 정부는, 일본 법무성 통계상 재일조선인 수가 약 64만명임을 인용하면서도, 한국적 특별영주권자, 조선적 특별영주권자의 수를 구분할 때에는 재외동포 순수 민간단체라고 하는 민단의 단원 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1952년 4월 28일(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 이후 2000년 말까지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조선인 총수 약 24만 5천명이 정부의 재외동포 통계에서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 정부는 각국 재외동포 통계 작성시, 각 국의 시민권 및 국적을 취득한 국외 이주민들도 재외동포 통계에 모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해방 후 지금까지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일본국적을 가진 자의 수도 3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수를 재일조선인 수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의 수는 현재 적게 잡아 64만명, 크게는 120만명에 이를 수 있으며, 재일조선인 중 조선적 숫자 또한 부정확한 것으로 정부 통계치보다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 <<2001년 국회 안보통일포럼, <재외동포 정책 및 법제정비를 위한 공청회>(재외동포의 현황과 정책 과제) 자료집 中, 「재일동포현황과 정책과제」(김경득 변호사) 발표문에서 인용함>>

II-2.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1998년, 김태기,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 논문)에서 대부분 인용함>>

1. 미군에 의한 일본점령기-남북분단 전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기본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일본점령기(1945.8~1952.4)에 형성되고 파생되었으며, 일본정부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는, 일본사회로부터 '배제'하고 또한 외국인등록법과 출입국관리령 등 엄격한 규정으로 '관리'해왔다.

해방초기 재일조선인은 해방민으로서의 지위와 적국민으로서의 이중적인 존재였으며, 이 시기 일본에는 약 200만~240만명의 재일조선인들이 있었다. 일본정부는 2차 대전 패배 이후 재일조선인의 신속한 귀환과 구제라는 전후처리보다는 해외 일본인 귀국을 우선시했다. 이 당시 약 200만명의 재일조선인들이 귀환했으며, 46년의 신탁통치 논쟁, 귀환시 지원금 1000엔 이하 규정으로 인해 일본에 잔류한 재일조선인은 약 64만명에 달했다. 다음은 1946년~ 남북분단 전의 재일조선인 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 46년 5월, SCAP/GHQ(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 외교국, "처우의 목적상 정식으로 수립된 Korean Government가 당해 개인을 조선인으로서 승인할 때까지, 추정상 그 일본국적을保持하고 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고 결정

- 46년 11월 8일과 12월 8일, 미국정부는 재일외국인정책에서, "총사령관은 대만계 중국인과 조선인을 군사상 안전이 허락하는 한 해방민족(*liberated peoples*)으로서 취급해야한다. 그들은 본 서면에 사용되는 '일본인'이라는 용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일본신민이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국민으로서 취급해도 된다"고 규정함.

- 일본정부와 정치가들의 某國人, 비일본인, 제3국민으로 명명하며, 일본사회 불안의 근원으로 선동.

- 1947년 5월 2일 외국인등록령 공포 / 7월 1일 실시. 등록령 제 11조, "대만인 중에서 내무대신이 정한 자 및 조선인은 이 칙령의 적용에 있어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 등록 및 등록증 휴대의무에 대한 재일조선인단체의 반발 및 반발에 대한 SCAP의 일축 / 대일강화조약이 발효될 때까지는 일본국민이라는 입장과 외국인 등록령에서는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모순. / 중의원, 참의원 선거권 일시적으로 중지하면서, 특별세인 재산세는 재일조선인에게 부과 / 일본국민으로서의 교육을 강요

- 민족학교 탄압의 문제 / 1947년 3월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의 공포 46년 10월 시점, 조련계 민족학교 초등 525개교(아동수 42,182명, 교원수 1023명), 각종 청년학교 12개교(생도수 724명, 교원수 54명)가 존재했음. / SCAP과 일 문부성, 1948년 1월 24일, '조선인설립학교의 취급에 관하여'라는 통첩 작성. "재일조선인은 1946년 11월 20일의 SCAP 발표에 따라 일본의 법령에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재일조선인 초·중학생은 일본의 공·사립학교에 취학해야 하며, 사립 초·중학교는 일본의 학교교육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 조련계 학교들, 1948년 2월말부터 전국적인 민족교육 옹호운동 전개 / 점령당국의 오사카·코베 비상계엄령 / 5월 5일, 재일조선

인단체와 일본정부와의 각서 체결, '일본의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에 준수할 것, 조선인 사립학교에서는 사립학교로서의 자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민족교육이 허용됨'

2. 남북분단 전후의 재일조선인정책

1945년 재일조선인 스스로의 권리보호단체가 결성되었는데, 조련(재일조선인연맹, 45년 10월)과 건청(조선건국축진동맹, 45년 11월)이 그것이다. 일본정부는 이시기 미군 점령당국 시기 형성된 차별 및 배제의 기본정책을 근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재일조선인 스스로의 단체활동을 탄압하고, 점령체제 이후 재일조선인에 대한 관리체계와 정책을 체계화했다. 다음은 남북분단 전후-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시기까지의 재일조선인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 1948년, 건동(신조선건설동맹)의 후신인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이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개칭, 조련의 북한 지지표명 / SCAP, 재일조선인문제를 일본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보기보다는 RED Purge(좌익색출)의 문제로 간주하기 시작함 / 48년 6월, 법무부 특별심사국의 조선인단체동향에서, 공산주의 세력으로 규정 / 조련대책과 관련된 일본정부의 對SCAP '공작', 48년 7월, 요시다 및 법무부의 재일조선인 공산주의자에 대한 강경책을 SCAP에 주문, 1949년 8월 22일, SCAP 민정국 조련해산 지시, 1949년 9월 8일, 법무부, 조련의 모든 조직과 민단의 두 개 조직 및 일본의 폭력조직을 해산단체로 지정.
- 재일조선인의 집단 강제송환 계획, 49년 7월, 요시다와 시라슈의 SCAP 방문, '구체적으로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나 일본의 부흥에 기여하지 않는 모든 재일조선인을 일본으로부터 추방하고 합법적이고 건전한 산업에 종사하고 일본에서의 재류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자에 한하여 일본국적 부여한다' /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SCAP의 반대로 무산됨.
- 2차 재일조선인학교의 폐쇄조치, 1948년말, 문부성이 SCAP에, 조련계 민족학교의 공산주의 교육을 거론함 / SCAP에 그대로 반영됨 / SCAP의 민간정보교육국, '1949년 2월 야마구치현의 조선인학교를 폐쇄하고 일본 공립학교화시키고, 조련 간부와 학교선생들을 강제송환시킬 것을 제안' / 미국의 대일정책을 반영한 SCAP의 반공정책, 재일조선인에 대한 탄압으로 귀결 / 일본정부의 '기술적'인 SCAP이용.
- 점령통치후의 재일조선인 관리체계와 정책 방향 / 외국인등록령 개정을 통한 불법

입국 및 등록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상시휴대의무와 외국인등록증 경신제 도입 / SCAP의 적극적인 관할하에, 1951년 10월 출입국관리령 공포, 1952년 4월 28일(대일 강화조약 발효일) 외국인등록법 공포 및 시행 / 재일조선인을 적극적인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법령정비

- 대일강화조약과 재일조선인의 국적 박탈 / 1952년 4월 28일 강화조약 발효일을 기점으로, 재일조선인의 일본국적을 박탈함 / 외무성 강화조약문제연구간사회, "46년까지 '일본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는 한반도로 귀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년, '일본에 잔류하는 자는 모두 일본국적을 취득하며, 한국국적을 선택하면 한반도로 귀환해야 한다' 의견표명 / 이미 배제·관리의 기본적인 정책의 틀 형성됨

3. 남북분단 이후 현재까지의 재일조선인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관계로 뒤에서 다룰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변천과정'을 통해 분단 이후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정책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II-3. 한국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1996년 통일원, 세계한민족총서 4, 「세계의 한민족 일본」 편 중, 「남북한의 재일동포정책」에서 대부분 인용했음>>

1998년 10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과거사 청산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수십년 간, 일본의 차별·배제 정책의 산 증인으로서, 과거사 청산의 주역으로 참여해야 할 재일조선인의 입장은 98년 한일정상회담 합의 내용 중 어느 곳에도 투영되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이는 재일조선인 사회의 많은 비판과 함께 미래에도 두고두고 커다란 문제거리로 남을 것이다.

1.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

한국의 재일동포정책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몇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래와 같다.

- 거주국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 거주국의 모범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동포들이 거주국 법제도 하에서 한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단절없이 본국과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적으로 지원한다
- 동포사회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대결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유·민주·인권 등 보편적 가치하에 대동단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부의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은 '자조노력'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동포행정의 창구를 현지사정에 밝은 해외공관으로 일원화한다. 과거 동포들이 정부 요로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동포업무의 혼선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시정해서 질서있는 동포행정이 정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 동포들이 모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를 권장·촉진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이를 정리하자면,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목표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 잘 적응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거주국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며 또한 모국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궁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 한국정부의 재일조선인정책

한국정부의 재일조선인정책은 민단에 대한 영사업무의 일부대행에서 출발하여 1966년 영주권 촉진운동, 1971년 민단중앙단장 선거 관여, 1978년 10억엔 지원으로 이어졌다. 해방 후 한일회담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0월부터 미국의 주선으로 추진되었으며 당시 한국 정부는 회담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으며 회담 만기인 53년에 성과없이 끝났다. 1952년 1월 18일의 한국 해상 60마일 이내를 영해로 사는 이승만선(평화선)을 선포하게 되고, 평화선을 넘는 일본어민을 체포, 구금하게 되자, 일본정부 또한 재일조선인들에 눈을 돌려 출입국관리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적발시, 오무라 수용소에 감금했으며, 이 때 감금된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어민과 교환하기 위한 일종의 볼모로 기능하기도 했다.

1952년 민단의 김재화 단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민단을 통해 일본이 접촉할 것, 한일회담에 교포 대표를 참석케 할 것 등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57년까지 어떤 협상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재일조선인 사회에 '한국정부의 기민설'이 유포되기도 한다. 이후 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재일조선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 1957년 재일조선인 교육지원비 지원액 2만 2천불

- 1961년 2월 문교부 교포교육조사단 일본 파견, 12월 장학관 1명, 교사 9명 파견하여 주일한국대표부 내에 장학관실 설치, 교사들을 도쿄, 교토, 오사카 등지의 한국학교등에 배치하여 민족교과 담당토록 함
- 1962년부터 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 모국 수학제도를 마련, 63년 4월 일본학교에 재학 중인 2-3세와 일반성인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주요 도시 10개소에 교육문화센터 설치. 7월에는 한국학교 및 교육문화센터 육성,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학술단체 연구활동 지원 목적의 재일동포 교육후원회 발족
- 66년 이후 여름방학 이용, 일본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고등학생으로 모국방문단 조직 서울대학교 재외국민 교육연구소 주관하에 국어, 국사, 반공도덕 등의 민족 교육을 실시함. 77년 이후 춘계는 대학생, 하계는 중·고생으로 나누어 실시함.
- 74년 재일조선인청년 문세광 사건이후, 민단원 전원에게 50시간의 민족교육을 실시, 사상적 무장을 강화하고 민단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불하여 한국유학을 가능케 해, 후일 민단의 간부가 되도록 장기계획을 추진함. 모국방문단, 명절성묘단의 한국방문을 적극 권장하고, 총련계에도 이를 확대하여 조건없이 안심하고 모국을 방문한 후 일본으로 귀국에서도 절대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획기적 정책을 위하게 됨.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구체적인 정책의 청사진 하에 추진된 것이라기보다는 안보제일주의라는 비판과 본국지향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비판받음

II-4. 북한정부의 재일조선인정책

<<1996년 통일원, 세계한민족총서 4, 「세계의 한민족 일본」 편 중, 「남북한의 재일동포정책」에서 대부분 인용했음>>
<<2000. 7. 서동만, 「북일수교의 전망과 대응」에서 일부 인용함>>

1.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한반도에는 분단이 지속되고 있으며,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고 한일국교정상화가 실현되었으나, 이는 한반도 전체와 일본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반쪽만의 관계, 즉 일본과 남한만의 관계임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북한의 관련 법률과 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재외동포정책은 다분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사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재일조선인 절대 다수가 남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지지하게 된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 북한 헌법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의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고 규정함, 제65조에는 “해외의 모든 조선 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
- 북한 국적법 제2조, “그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적 및 법적 보호를 받는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 “외국에 거주하는 공민은 자기 조국으로 자유로이 내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북한 행정부 내에도 동포출신들을 중용하고 있음.
- 북한의 통일방안에도 해외동포들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속에서도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10대 시정방침 속에 포함시키고 있음.

2. 북한의 재일조선인정책

필자의 한계로, 북한의 재일조선인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살펴본다. 북한의 재일조선인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유엔 회원국 183 개국 가운데 일본이 국교를 맺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라는 사실이다.

- 1955년 5월 26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결성시 조직강령 제1조, “우리는 재일 전체동포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주위에 충집결시킨다”
- 1957년 재일동포 교육비 61만 5천 5백 80불 지원
- 1959년 12월 이후 니아가타항에서 시작된 재일조선인 북한 귀환 추진 / 1958년 8월 15일 해방 13주년 기념대회에서 총련의 제안, “일본과 북한은 즉시 친교관계를 수립할 것, 귀국희망자는 누구나 귀국토록 하고 일본 국적 이탈은 수속서류와 총련 중앙발행의 증명서로 가능케 할 것, 오무라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들은 원하는 곳으로 보낼 것, 이를 위해 일본은 귀환계획을 즉각 세울 것, 북한적십자 대표가 일본에 입국할 수 있게 조치할 것”
- 1959년 4월 제네바에서, 북한과 일본의 적십자사 대표들 북한귀환 문제와 관련된 회담 및 북일 본국 비준함 / 59년 8월 13일 켈커타에서 협정 조임함(켈커타 협정)
- 1972년까지 북한 귀환자 수는 약 9만 5천명에 달함. 귀환 동포들의 일본으로의 재입국은 불허됨.

II-5.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변천과정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2001년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에서 발행한, 「끝나지 않은 식민의 역사, 재일조선인」 중,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에 대하여」라는 부분을 대부분 인용했다.>>

1. 용어의 문제와 관련하여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용어로는 ‘재일한국인’, ‘재일교포’, ‘재일동포’, ‘재일한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조선·한국인’, ‘재일’, ‘재일코리안’, ‘재일조선인’ 등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재일한국인’은 지극히 비역사적, 이데올로기적인 용어로, 식민지 한반도 출신자 및 그 후손으로 일본에서 영주자격을 가지고 사는 대상을 일컫는 말로는 적절하지 못하며, 오히려 ‘뉴커머(New Comer)’로서의 의미로만 이해되는 것이 정당하다. 과거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이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으며, 그 체제하에서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굳어진 인상이 짙다.

정인섭은, ‘재일교포’라는 용어에 대해, ‘광복이전 일제 식민기간 중 일본인 자격으로 일본으로 이주한 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자 및 그 자손’을 가리키며, ‘광복이후 유학, 상용 등 외국인 자격으로 도일하여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하고, ‘혈통상 한반도 출신인 자라 할지라도 일본국적으로 귀화한 자는 제외’하고, ‘민단계 교포 뿐만 아니라, 이른바 친북한 조총련계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정인섭 논문 구성의 편의상 구분일 뿐, ‘재일교포’라는 용어 사용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지는 못하는 듯하다. 도한 혈통상 한반도 출신인 자로서 일본국적으로 귀화한 자를 제외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재일교포’ 혹은 ‘재일동포’의 의미를 정인섭의 개념 규정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타국의 집단, 예를 들면 ‘재미교포(혹은 ‘재미동포’)’ 집단과 지역적인 구분이 가능한 점 이외에는 일본에서의 정체성 있는 집단에 대한 표현이 되기를 힘들다.

‘재일한인’이라는 표현도 ‘재일한국인’이라는 표현에서 특정 국적의 소재를 배제한 점에서는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역사적인 정체성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며, 정인섭은 ‘재일교포’라는 용어를 이후 논문에서는 ‘재일한인’으로 다시 표현하기도 한다.

‘재일한국·조선인’이라는 용어와 ‘재일조선·한국인’이라는 용어는 일본정부가 거유 외국

인 파악시 공식 통계상 접근하는 용어로서의 '한국·조선(韓國·朝鮮)'이라는 의미 이상을 나타내지 못하며, 오히려 일본정부가 앞서서 즐겨 사용하는 인상을 깊게 풍기고 있다. 김석범은, '재일한국·조선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분단을 중화시킨 형태의 이 용어는 중화보다는 고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공손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글자 자체에 3·8선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아 별로 유쾌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재일'이나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오히려 모든 용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듯 보이나, 동시에 모든 복잡한 역사적 과정과 상황을 사장시키고 단순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일본내 역사적 집단을 표현해내는 고유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차별적 용어들을 정리하여 '재일조선인'으로 통칭하는 것은 다양한 용어가 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인에 대한 집요한 차별을 극복하는 운동 자체이며, 지난 90년 세월 동안 재일조선인들의 역사적 소외를 이해하며 함께 이 미완의 문제를 푸는 출발점일 것으로 생각한다.

밝혔듯이, 재일조선인에 대한 상이한 용어 사용은, 지난 시기 일제 식민지 역사, 남북의 분단, 일본내에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국내외 필자들의 입장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필자는 이러한 상이한 용어 사용에 대하여, 재일조선인 법적 지위의 역사와 현상을 드러냄으로써 '조선적'이라는 용어와, '재일조선인'이라는 용어 사용의 정당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재일조선인들의 역사적 정체성이 왜 '조선적(朝鮮籍)'이라는 용어로 수렴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가 현재 국내외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특정한 방향과는 무관하고, 또한 재일조선인들과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정책집단의 입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는 크게, 1) 일제 식민지 시기, 2) 1945년 해방 전후, 3) 1952년 샌프란시스 강화조약 시기, 4) 1965년 한일법적지위협정 시기, 5) 1982년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기, 6) 1991년 한일 외무장관의 각서(소위 '91년 각서') 등을 통해 변천되었다. 아쉬운 것은 북일간의 미수교 상태로 인해,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가 한일간의 외교관계, 협정, 각서를 중심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함이 남아있다. 한반도 출신자 및 그 후손으로서의 재일조선인들의 법적 지위는, 북일수교 이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2. 법적지위 변천과정

1) 식민지 시기의 법적 지위 - 일본제국의 신민

주지하다시피,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왕 및 조선인민의 강한 저항과 반대를 총검으로 누르고 '한일병합조약'을 무력으로 체결, 주권을 빼앗는 식민지 지배를 확립했다. 병합조약 제1조는, "대한제국의 황제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라고 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토주권은 일본제국에 귀속되었고, 대한제국의 모든 인민들은 자동적으로 일방적으로 일본제국의 국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법·형식적으로는 '일본제국 신민'이 되어, 일본인(내지인)과 평등한 지위에 놓이고, 정책적으로도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는 미명아래 일본인과 동등하게 간주되었지만, 구체적인 법 적용 및 정책의 실시에서는 일본인과는 다른 '조선인'이라는 범주로 차별하고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 예를 들어, 1922년에 제정된 조선호적령에 의하면 한반도에 사는 조선인들은 물론 일본 내지에 있는 조선인도 일본 호적에 입적하지 못하고, 일본인의 양자가 되거나 혹은 일본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 호적에 편입하도록 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법·형식적으로는 '일본제국 신민'이라면서 국적법 적용의 기초인 호적상의 취급은 민족적인 구분이 명확했고 명백히 식민지 주민이었던 것이다.

2) 1945년 해방 직후의 법적 지위 - 기호로써의 '조선(朝鮮)' 국적 표시 (조선적)

1945년 8월 일본제국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여 태평양전쟁이 종결됨에 따라, 35년간 지속된 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었고, 그 결과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형성된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배와 관리, 억압도 실질적으로 종식되어야 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들은, 전쟁이 끝난 45년 8월 15일부터 법적으로 전쟁상태가 종결된 1952년 4월 28일까지 약 7년간 연합국의 점령하에 있었던 일본내에서, GHQ(연합국총사령부)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그 법적지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GHQ나 일본정부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취급되었다. 예컨데, GHQ는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조선을 특수지위국(special status nations)이라 했지만,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는 '해방인민(liberated people)'으로 '일본인(Japanese)'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일본 국민(Japanese subjects)이었다는 이유로 '적국민(enemy nationals)'으로 대우하는 방침을 취했다.

또한 재일조선인의 국적에 대해서 "1945년 9월 2일 이래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한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취하면서, "연합군의 정책수행과 일본정부의 조치는 재일조선인에게서 그 국적을 빼앗거나 또는 새로운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

고, '국적의 최종결정은 평화회의 및 그것에 종속하는 일본과 조선의 조약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적에 관하여 일본정부도 "일본정부는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변함없이 일본 국적을 가진다고 이해해야 하며" "강화조약의 체결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대로 일본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을 밝히고 있다. 즉, 일본과 연합국간에 강화조약이 체결·발효되기까지는 식민지 지배에 의해 강제된 재일조선인의 일본 국적은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1947년 5월 2일 칙령 제207호로 공포·시행되었던 '외국인등록령'은 그 제11조에서 "대만인 중 내무대신이 정한 사람 및 조선인은 이 칙령의 적용상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 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재일조선인들을 외국인 등록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아 국민고유의 권리인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GHQ와 일본정부는 모두 자기 형편과 필요에 따라 법적 지위를 굽힐시켰다. 즉 부분적이지만 역사적 정주 원인을 인정하여 예외적인 적용을 인정한 출입국관리령과는 달리 외국인등록령은 일반 외국인과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이 외국인 등록령에 의해 재일조선인들은 20항목에 달하는 사항, 즉 ①등록번호 ②등록연월일 ③이름 ④출생연월일 ⑤남녀구분 ⑥국적 ⑦국적에 속한 나라의 주소 또는 거주지 ⑧출생지 ⑨직업 ⑩상록한 출입국항 ⑪여권번호 ⑫여권발행 연월일 ⑬상록허가 연월일 ⑭재류자격 ⑮재류기간 ⑯거주지의 지번(地番) ⑰세대주의 이름 ⑱세대주의 친족관계 ⑲근무처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⑳시정촌장(市町村長)의 직위와 성명을 기입하게 된다.

해방후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 해방국민이자 적국민으로 이중적인 취급을 당해야만 했던 재일조선인들은 이때 외국인 등록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고 이상의 항목중 국적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조선(朝鮮)'으로 기재하도록 주의를 받았으며, 이때의 '조선(朝鮮)'은 당시에 남북한에 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한반도를 가리키는 용어 혹은 기호였다.

1948년 남북한에 각각 별개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50년 1월 6일 대한민국 거류민단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외국인등록 증명서 교체에 관한 건의서"를 발송하고, 그 속에서 외국인등록시 국적난의 '조선(朝鮮)'을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으로 통일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국정부의 주일대표부 역시 같은 요청을 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처음 일본 외무성은 '조선(朝鮮)'이란 '전(全) Korea'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시로서는 한국이나 대한민국과 같은 용어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답변하였다. 한국이 이 문제를 다시 GHQ에 부탁하자, GHQ는 일본정부에 대한 2월 20일자 각서에서 한국 및 대한민국의 사용을 지시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2월 23일의 각의에서 이후 공문서에는 한국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결정하고, 외국인등록시에도 이를 사용하

기로 하였다. 이에 외국인등록시 본인이 희망하면 기존의 '조선(朝鮮)'이라는 용어를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단 이것이 실질적인 국적문제나 국가승인과는 전연 관계가 없으며, 개인의 법적 지위상으로 차이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적 표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을 놓고 있는 재일조선인들의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의 '조선(朝鮮)' 표기는 이처럼, 1947년 당시 모든 일본거주 재일조선인들의 외국인등록증 국적란에 일률적으로 표기된 국적 아닌 기호였으며, 이후 한일간의 외교관계가 성립되어 대한민국 국적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조선(朝鮮)'이란 국적란의 표기는 '한반도 출신자임'을 나타낼 뿐이다. 참고로, 현재 재일조선인들의 외국인등록시 국적취급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한국 표기자는 그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의미한다.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적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조선(朝鮮)' 표기자는 그가 한반도 출신임을 의미하며, 조선은 국호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들은 국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어떠한 입장도 표시하고 있지 않다.) ④ 국적난 표기를 '조선(朝鮮)'에서 '한국(韓國)'으로 변경함은 당사자의 출신지 표시를 정식 국적국으로 변경함을 의미하며, 이에는 그가 한국민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한국에서 조선으로의 변경도 당사자의 자유의사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기재착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중앙정부가 각 자치체의 변경허가 업무를 엄격히 통제하지는 않고 있다. ⑤ 부모의 국적표기가 각각 한국과 조선으로 상이한 경우 자의 국적표기는 부의 표기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⑥ 일본정부가 발표하는 거류 외국인 통계에는 한국과 조선을 별도의 국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국(韓國)-조선(朝鮮)"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발표하고 있다.

3)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의 법적지위 (조선적)

1951년 9월 8일 태평양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시킨 평화조약은 소련을 제외한 다른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어 1952년 4월 28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일본은 이 조약에서 한반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여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도 법적으로 끝나게 되었으며, 일본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평화조약 제2조 (a)의 규정에 의해, 식민지 지배에 의해 강요된 일본 국적은 한반도의 조선인만이 아닌 일본에서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해서도 평화조약의 발표와 함께 당연히 소멸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명백히 일본내에서 외국인이 된 재일조선인은 재류자격과 재류기

간에 대해 법률 제126호 제2조 6항에서 규정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령을 적용하여 일반 외국인과 같이 강제퇴거 적용대상이 되었다. 통칭 126-2-6이라는 재류자격은 다음과 같다.

“ 일본정부와의 평화조약 규정에 기초한 동 조약의 최초 효력 발생일에 일본 국적을 이탈하는 자로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이 법률 시행일까지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한 자(1945년 9월 3일부터 이 법률 시행일까지 일본에서 출생한 아이들을 포함한다)는 출입국 관리령 제22조 2항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의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이 결정되기까지 재류자격을 연장하지 않아도 일본에 재류할 수 있다.”

결국 일본정부는 ‘평화조약’으로 재일조선인들의 역사적 정주 원인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털고, 일본 정부 스스로가 ‘영주’를 인정한 뒤에도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를 온존시키고 재입국허가의 적용에 의한 출국 및 귀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 내에 ‘식민지 주민들’을 유치시킨 것이다. 말하자면 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하룻밤 사이에 일본으로의 강제적 이주와 역사적 정주 원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은 온데 간데 없고, 일반 외국인과 같이 처우되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어 외국인등록증을 상시 휴대해야 하며 강제적인 지문날인을 통해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4) 1965년 한일법적지위협정 이후의 재일조선인 (협정영주권을 가진 한국적 / 영주권없는 조선적)

1965년 6월 22일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13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식민지 통치의 종료에 따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한일기본조약과 4개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 4개의 협정 중의 하나가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협정’(통상 ‘한일법적지위협정’이라 약칭됨)을 체결했다. 법적지위협정은 그 전문에서, “다년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들 대한민국 국민이.....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국 및 양국 민간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일본의 패전에 따라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에도 20년간에 걸쳐 평화조약만을 근거로 한 일본 국적의 박탈, 국가간 협정 부재를 이유로 자의적 차별을 강제적으로 받아온 재일조선인은 이 협정에 의해 비로소 법적지위 및 처우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법적지위협정은 우선 한반도에 대한 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역사적 청산을 강제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디 한 줄 언급됨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반역사적이고, 한국국적 보유자만을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식민지 지배와 역사적 정주의 경험을 함께 한 재일조선인 사회에 또다른 분단을 양산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에서 반민족적이고, 법적지위협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재일조선인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서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이며, 나아가 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국가간 실정과 국제법 나아가 인권보장에 관한 국제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당시 한국 군사정부의 무지 그 자체에 다름아니었다.

이 협정의 체결로 결국 역사적 책임은 청산되지 않고 불합리한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대부분 그대로 존속되었으며, 민족의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민족교육 또한 무시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 때까지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민족성의 부정에 대해 ‘지위협정에서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할 의무가 없다’라는 구실과 함께 법적 근거까지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협정에 의해 결국 재일조선인 중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는 ‘협정영주권자’로서의 법적지위를 획득하게 되었고, 1966년 아래 451,426명이 협정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협정영주 1세는 총 341,466명, 협정영주 2세는 109,960명으로 그간의 사망자를 제외하면 1991년 말 기준 약 32만 3천명이 협정영주자 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영주성 재일조선인의 대략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 협정영주권 부여조차도 그 신청기간인 1971년 1월 16일까지 일본에 출생한 자 및 그 자녀에게까지만 부여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제3세가 출생하게 되는 1990년 전후부터는 제3세의 영주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되는 크나큰 문제점(소위 ‘91년 문제’)을 낳게 되었다.

5) 1982년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협정영주권을 가진 한국적 / 특례영주권자로서의 조선적 / 영주권없는 조선적)

일본은 1952년의 평화조약으로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1956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인종·성 등에 의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편적 존중 및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과 협력하고 공동 및 개별적 행동을 취할 것을 유엔헌장 제56조에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차별을 유지해왔던 것은 한일법적지위협정 체결의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재일조선인과 일본의 시민단체에 의한 국제인권조약 비준요구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마침내 1982년 1월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의정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들 조약의 체결은 결과적으로, 국적과 민족의 차이를 이유로 하는 일본 내에서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의 철폐로 귀결되었다. 예를 들면 베트남 또는 라오스 등에서 도망쳐 온 난민에게는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을 자국민과 같이 적용하면서, 해당 사회에서 태어나 자라거나 혹은 수십년을 거주하면서 노동과 납세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재일조선인이나 대만인 등 정주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합리하고 모순된 것으로 비치게 마련이다.

난민조약의 비준을 계기로 출입국관리령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계기로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도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한일법적지위협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도 영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65년 협정에 기초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여전히 불안정한 재류자격에 방치되었던 '법 126조 해당자' 및 그 자녀(4-1-16-2 해당자)가 1982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영주를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또 법 126조 해당자의 자녀로 위의 신청기간(1986년 12월 1일) 이후에 일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출생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나아가 4-1-16-2 해당자의 자녀로 위의 신청기간 종료 때까지 출생하고 신청까지 일본에 계속 재류한 경우는 영주를 인정한 것이다. 즉 1982년 1월 1일부터 1986년까지 5년간 신청을 받아 1952년 평화조약 발효에 즈음한 일본국적 상실자 및 그 후손에게 모두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즉 일반영주권의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통상 특례영주권으로 불렸으며, 1991년 말 기준으로 약 26만 8천명이 이들 특례영주권자였다.

6) '91년 각서'와 재일조선인

(특별영주권을 가진 한국적 / 특별영주권을 가진 조선적)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와 함께 서명되어 1966년 1월 17일 발효한 법적지위협정은 이른바 협정영주 2세까지만 적용되며, 이들의 후손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만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고 규정했고 그 25년 시한의 만료일이 91년 1월 16일이었다.

이러한 재협의의 문제를 소위 '91년 문제'로 명명되며 한일 양국의 외무장관은 합의각서라는 형식으로 두 나라 사이의 합의를 정리하였다. 각서는 재일 3세 및 그 이후의 세대에 '영주자격'을 인정하고 이들 영주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지문날인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독자의 판단으로 행해지는 민족교육을 용인함과 동시에 교원채용의 응시를 인정하며,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고용의 기회를 확대할 것을 확인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관리와 차별을 시정하는 진전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또한 1991년의 합의 각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1991년의 출입국관리특례법의 시행으로,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아래 복잡하게 구분되었던 구 식민지 출신 재일조선인 및 재일 대만인과 그 후계의 법적 지위가 비로소 일원화되어 이른바 협정영주권 제도가 없어지게 되고 특별영주권이 부여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대상자는 약 65만명에 이르고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 외국인등록 기록을 통하여 그들의 일본거주를 파악 특별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였다. 이로써 재일조선인 중 과거 65년의 협정영주권과 82년의 특례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법126호자'들도 비로소 이때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인 한일간의 재협의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재일조선인들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인권확립을 둘러싼 움직임에 충분히 귀기울이며, '재일 구식민지 출신자들에 관한 전후보상 및 인권보장'의 광범위한 요구를 수용하는 광의의 협정, 즉 '65년 협정'의 철폐와 새로운 법적지위협정의 체결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도 아닌 행정부의 재량 행위에 의해 실시 가능한 각서로 정리한 것은 지극히 개탄스러운 것이다.

또한 이 91년 협의 각서는, 국제인권법의 기본원칙인 내외인 평등의 원칙 또는 비차별·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있고, 민족의 문화적 자결권과 소수민족의 권리옹호에는 멀리 이탈해 있으며, 궁극적으로 재일조선인을 대변하기에는 지극히 외교적 제스처에 충만해 있다.

III. 나오며

개괄적으로나마 남북한 및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책을 두서 없이 나열했지만, 몇 가지 생각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앞서 밝혔지만, 현재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통계수치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통계 수치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재일조선인정책 및 이들을 위한 법제도의 미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재일조선인의 숫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 정부가 각 국 재외동포의 통계 및 숫자를 2년에 한 번씩 작성하고 있지만, 참고로 삼는 1차 데이터는 현지 한인회가 주장하는 통계 및 숫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는 신뢰하기 힘든 것이며, 장차 국민의 세금인 재외동포 관련 예산의 우선 순위에 커다란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정확한 통계 및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기법 및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만 한다.

둘째,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재일조선인 및 그 후손들 중, 특별영주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조선적(朝鮮籍)'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조선적 동포들은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에 의해 현실적으로 '무국적자'로 간주되고 있다. 고향이 90% 이상이 남한의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인 이들 조선적 동포에 대해 정부나 민간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의 안보적 시각에서 시급히 벗어나, 이들의 자유로운 입국을 보장하여, 고향 및 친지방문, 사업, 학업, 관광, 결혼, 민간교류 등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적 국내 입국시 일본 현지 영사관의 '한국적으로의 국적전환 요구'는 당장 없어져야만 한다.

셋째, 65년 한일간에 맺은 협정 관련 미공개 회의록이 일반에 시급히 공개되어야 한다. 1965년의 한일협정은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인해 일제 강점기의 전쟁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소송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일협정으로 양국 간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일단락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상충되는 의견을 피력하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폈다. 한편 역사의식이나 재일조선인들의 의견청취없이 98년 한일정상회담 '공동(共同)선언'에 거론된 과거사 청산 문제는 심각히 제고되어야 한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동아시아 민중들의 존엄과 자존을 짓밟은데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면했던 '공(空)선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1998년 12월,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을 중심으로 처음 국내에서 시작되었던 '재일조선적 소개하기'와 '재일조선적 입국장벽 없애기'가 조금씩 알려져, 행정 부처 관계자들과 입법담당자들, 그리고 국내 학계에서도 '조선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한 발자국 앞서 나간 느낌이다. 그러나 재일조선적의 왕래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미완의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하고, KIN일본위원회는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끝>

<참고자료>

1. 2001년 외교통상부 여권과, '재일동포 및 재일조선인의 한국내 법적지위와 출입국에 관한 건'에 대한 KIN회신 답변서

2. 2001년 국회 안보통일포럼, <재외동포 정책 및 법제정비를 위한 공청회> (재외동포의 현황과 정책과제) 자료집 中, 「재일동포현황과 정책과제」 (김경득 변호사) 발표문
3. 1998년, 김태기,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 논문)
4. 1996년 통일원, 세계한민족총서 4, 「세계의 한민족 일본」 편 중, 「남북한의 재일동포정책」
5. 2000. 7. 서동만, 「북일수교의 전망과 대응」
6. 2001년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끝나지 않은 식민의 역사, 재일조선인」 중,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7. 「대일민족소송의 회고와 전망」 /
부제 : 일본국의 과거책임은 「전후보상의 이론」으로는 청산될 수 없다
재외한인학회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일민족소송 학술대회자료집.
2000. 3. 25. / 지익표 변호사
8. 보도자료, <"한일협정" 문서 공개 촉구를 위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00인 기자회견>
- 우리는 진정한 월드컵을 원한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 2002. 6. 21.